제2318호

# 고양시보

2026년 10월 23일 (금)

## 차 례

### 입법예고


| | | |
|---|---|---|
| 고양시 공고 제2026-2296호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 고양시 공고 제2026-2297호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 고양시 공고 제2026-2298호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 |
| 고양시 공고 제2026-2299호 |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4 |
| 고양시 공고 제2026-2300호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 50 |
| 고양시 공고 제2026-2302호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
| 고양시 공고 제2026-2306호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3 |
| 고양시 공고 제2026-2308호 |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2 |
| 고양시 공고 제2026-2309호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8 |
| 고양시 공고 제2026-2310호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7 |
| 고양시 공고 제2026-2312호 |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2 |


### 고 시


| | | |
|---|---|---|
|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6-20호 | 지적기준점표지 신규 설치 및 폐기 고시 | 149 |
| 고양시 고시 제2026-276호 | 도로명주소 고시 | 152 |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6-2282호 |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154

발행 : 고양시 / 편집 : 언론홍보담당관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6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 건축물 입주 등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표 1).

- 조정내역: 9개 통 28개 반 증설

※ (조정 전) 1,134통 7,052반 → (조정 후) 1,143통 7,080반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민자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031-8075-2484
- 팩 스: 031-8075-496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성사1동란 4통 및 5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통 3반 중 “능보2차”를 “능보상가연립”으로 하며, 같은 란 11통 2반 중 “세인”을 “세인주택”으로 하고, 같은 통 6반 중 “명림아트”를 “703-13·14·15 명림아트빌라”로 하며, 같은 란 13통 4반부터 7반까지 중 “삼화아파트”를 각각 “삼화그린아파트”로 하고, 같은 통 8반 중 “삼화빌라”를 “삼화그린빌라”로 하며, 같은 통 9반부터 11반까지 중 “명림”을 각각 “명림주택”으로 하고, 같은 란 15통 4반 중 “리스아파트”를 “리스맨숀”으로 하며, 같은 통 8반 및 9반 중 “초원”을 각각 “초원연립1차”로 하고, 같은 란 17통 12반 중 “LG타운”을 각각 “LG주택”으로 하며, 같은 란 19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0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성사1동 | 4 | 1 | 성사동 중<br>404-8 미도아파트5차 1동 101-505 |
| | | 2 | 404-8 미도아파트5차 1동 106-510 |
| | | 3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1-504 |
| | | 4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5-508 |
| | | 5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9-513 |
| | | 6 | 404-7 미도아파트5차 3동 101-505 |

| | | | |
|---|---|---|---|
| | | 7 | 404-7 미도아파트5차 3동 106-510 |
| | | 8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01-505 |
| | | 9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06-510 |
| | | 10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11-515 |
| | 5 | 1 | 성사동 중<br>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01-505 |
| | | 2 | 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06-510 |
| | | 3 | 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11-514 |
| | | 4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01-506 |
| | | 5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07-513 |
| | | 6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14-518 |
| | | 7 | 422-2 미도아파트6차 6동 101-505 |
| | | 8 | 422-2 미도아파트6차 6동 106-510 |
| | | 9 | 422-2 미도아파트6차 7동 101-505 |
| | | 10 | 422-2 미도아파트6차 7동 106-510 |
| | | 11 | 422현대그린빌라 에이·비·씨·디, 미도상가 |
| | 19 | 1 | 주교동 중<br>616장미아파트2차 101-504 |
| | | 2 | 616장미아파트2차 105-508 |
| | | 3 | 616장미아파트2차 109-512, 616-1·2·3·4 |
| | | 4 | 618-6서부빌라 |
| | | 5 | 618-7대명다세대 가·나·다·라동 |
| | | 6 | 618-5성심주택 가·나동 |
| | | 7 | 618, 618-15·17·18세인다세대, 618-2·3 |
| | | 8 | 618-20금산다세대 가동 |
| | | 9 | 618-19금산다세대 나동 |
| | | 10 | 618-4금산다세대 다동 |
| | | 11 | 618-8세인주택 가동 |
| | | 12 | 618-30세인주택 나동 |
| | | 13 | 618-33세인주택 다동 |
| | | 14 | 618-34세인주택 라동 |
| | | 15 | 618-35세인주택 마동 |
| | | 16 | 618-9조일다세대 |
| | | 17 | 619-4안국빌라 |
| | | 18 | 619-1·2·3·4·5·6, 620-1·2·3·4·5·6·7·8·9 |
| | 20 | 1 | 주교동 중<br>623-15신성베스티아 105동 |
| | | 2 | 623-5청라빌라 |
| | | 3 | 623-3성림주택 나동 |
| | | 4 | 623-21성림주택 가동 |
| | | 5 | 623-1원앙다세대 |
| | | 6 | 623-7원앙빌라2차, 623-8(퍼스트빌4차) |
| | | 7 | 623-11미성다세대 가동 |
| | | 8 | 623-13미성다세대 나동 |
| | | 9 | 623-12미성다세대 다동 |
| | | 10 | 623-16원앙빌라5차 가동 |
| | | 11 | 623-17원앙빌라5차 나동 |
| | | 12 | 623-18상록주택, 623-19 |
| | | 13 | 623-6성림주택 다동 |
| | | 14 | 623-22성림주택 라동 |
| | | 15 | 622대진6차 |
| | | 16 | 622-12·15성림 |
| | | 17 | 621-1·2·3·4·5·6·7·8·9·10·11·12·13, 622-2·3·4·5·6·7·8·9·10·11·13 |

같은 표 중 효자동란 1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3통 1반 및 3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5통 1반부터 3반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8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19통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20통 중 “지축역 수피움”을 각각 “지축역아테라”로 하고, 같은 란에 22통 및 23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효자동 | 1 | 1 | 북한산동 산1-1·2·3·9·10, 1~585-1 |
| | 3 | 1 | 지축동 중<br>307, 309-1 백운아파트 2동·5동·7동 |
| | | 3 | 지축동 중<br>산73-11, 309-7~10, 309-12~19, 310, 310-1~5, 312, 312-1~6, 319-1~17, 319-19, 320-1~6, 321, 322-1~11, 323, 323-1~5, 324, 324-1~3, 325-1~4, 326, 329, 329-1~3, 332, 333-1~3, 367-4, 367-15, 367-17~21, 367-29, 368, 376-3, 378-2, 386-2 |
| | 5 | 1 | 지축동 중<br>산127-1, 산132, 산133-3, 산133-5~8, 산133-14, 산133-16, 산134-1~2, 산135-1~9, 산136, 산137-1, 산138, 산139, 산140, 산141, 산142-1, 산142-2, 산142-3, 산142-6, 산142-12, 산142-15~16, 산142-18, 산142-19, 산143, 산144, 산145-1~6, 산146, 산147, 산148-2, 산148-3, 산148-4, 산148-7, 산149-1, 산151-1, 산151-3, 산151-4, 산151-6, 산151-7, 산151-10, 산156, 산157, 산158, 산159-3, 산159-4, 산223, 415, 416, 417-5, 418-10, 553-1, 553-9, 553-10, 553-13~15, 577, 577-12, 579, 580-1~3, 580-9, 580-10, 580-11, 580-12, 587-1, 588, 588-2, 588-3, 588-7, 589, 589-1~4, 589-6, 589-7, 590, 591, 592, 592-1, 593-1~2, 593-5, 593-6, 593-7, 594, 594-2, 594-3, 594-4, 594-6, 594-7, 595, 595-7, 595-15, 596, 598, 598-2, 598-3, 600-2, 600-3, 601-1, 602, 603 |
| | | 2 | 지축동 중<br>산72-2, 산72-4, 산72-5, 산72-10, 산81-1, 산82, 산83, 산83-1, 산83-2, 산83-3, 산83-4, 산84, 산84-1, 산86, 산87-1, 산87-4, 산87-6~18, 산88-1, 산88-2, 산88-3, 산88-6, 산88-7, 산88-8, 산88-9, 산88-13, 산104, 산105, 산106-2~3, 산107-1, 산107-2, 산107-3, 산107-4, 산107-5, 산107-6, 산108-1, 산109-1, 산109-2, 산109-3, 산109-4, 산110, 산114-3, 산115, 산116, 산118, 산119, 산120-1, 산120-8, 산120-9, 산126, 산126-1, 367, 367-1, 367-2, 367-3, 367-5, 367-6, 367-7, 367-8, 367-9, 367-11, 367-12, 419-2, 419-4, 419-5, 419-6, 420, 421-1, 424-13, 424-14, 424-15, 425-15, 425-20, 428-1, 429-3, 429-4, 429-5, 432, 440-30, 440-31, 440-50, 440-55, 440-56, 440-69, 440-74, 440-75, 440-76, 440-77, 440-78, 440-81, 440-94, 440-95, 440-96, 440-98, 440-99, 440-100, 440-101, 440-102, 440-103, 440-106, 440-109, 440-111, 440-112, 440-113, 440-114, 440-132, 440-133, 440-134, 440-135, 440-151, 443-1, 443-7, 443-19, 518-2, 518-5, 518-6, 518-7, 517-35, 972, 974(지효초등학교), 976, 976-1~5, 978, 978-1, 978-3~5, 983, 983-1~5, 985(학교), 986, 986-1~3 |
| | | 3 | 지축동 중<br>1133, 1133-1~5, 1134, 1134-1~2, 1136, 1136-1~2, 1137(공), 1139, 1139-1~9, 1142, 1142-1~3, 1142-4(공), 1142-5~14, 1144, 1144-1~17, 1146, 1146-1~4, 1150(공), 1151, 1151-1~4, 1154, 1154-1~10, 1156, 1156-1~5, 1158, 1158-1~5, 1160, 1160-1~2, 1162, 1162-1, 1165 |
| | 6 | 1 | 지축동 중<br>519-1, 519-16, 519-17, 519-18, 520, 520-1, 521, 522-12, 523-7, 524-1~5, 525-1, 525-2, 525-6, 526, 888, 888-1(공원), 888-2, 890공원, 890-1~6, 892, 892-1~3, 892-4(공원), 892-5~12, 894, 894-1~7, 895, 896(공원), 897, 897-1~4, 903(지축초등학교), 922(지축중학교), 924(공원), 924-1~4, 924-6~9, 926, 926-1~12, 928-2~4 |
| | 8 | 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1호~2803호 |
| | | 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4호~2805호 |
| | | 3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1호~2903호 |
| | | 4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4호~2905호 |
| | | 5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1호~2903호 |
| | | 6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4호~2905호 |
| | 19 | 1 | 지축동 중<br>472-7, 476-16, 694-1, 694-2, 694-32, 695-1, 695-6, 695-24, 695-30, 994(공원), 996, 996-1~3, 998, 998-1, 998-2(공원), 998-3~4, 1000, 1001(공원), 1005(공원), 1005-1~2, 1005-4~9, 1007(공원), 1007-1~2, 1007-4~8, 1007-9, 1009(공원), 1057, 1057-1~3, 1057-5, 1059, 1059-1, 1060(공원), 1061 |
| | | 2 | 지축동 중<br>472-46, 472-48, 473-1~3, 473-8, 685-2, 685-4, 693-1, 693-5, 693-6, 694-18, 694-21~23, 694-27, 694-35, 695-9, 699-1, 702-4, 702-9, 703-5, 704-7, 704-8, 704-17, 704-18, 704-22, 705-1, 705-6, 705-7, 705-8, 706-1, 706-2, 706-4, 706-5, 706-6, 708-3, 709, 709-1, 827-10, 1017, 1017-1~9, 1019, 1019-1, 1019-3~10, 1021, 1021-1~9, 1026-2, 1028, 1028-1~10, 1030, 1030-1~11, 1032, 1032-1~11, 1034-1, 1034-2, 1038-1(공원), 1040, 1040-1~3, 1041, 1041-1~9, 1043, 1043-1~11, 1044, 1044-1~2, 1048 |

| | | | |
|---|---|---|---|
| | 22 | 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1호~2903호 |
| | | 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4호~2905호 |
| | | 3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1호~2702호 |
| | | 4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3호~2905호 |
| | | 5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1호~2902호 |
| | | 6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3호~2905호 |
| | 23 | 1 | 지축동 중<br>471, 472-26, 472-29, 472-30, 472-40, 472-58, 476-3, 476-6, 476-7, 476-21, 476-25, 476-27, 476-30, 476-38, 476-40, 476-46, 476-47, 476-54, 480-1, 480-8, 480-9, 481, 482, 482-2, 483, 483-2, 484, 486-1, 486-5, 486-8, 486-9, 487-5, 487-29, 487-30, 487-37, 488-2, 488-8, 708-2, 708-4, 708-5, 708-9, 827-33, 1063(공원), 1070-1~2, 1072, 1072-1, 1074, 1074-1~5, 1076, 1076-1~4, 1078(종교), 1078-1(공원), 1080, 1080-1~11, 1082, 1082-1~8 |
| | | 2 | 지축동 중<br>산90, 440-32, 440-33, 440-34, 440-35, 440-39, 440-44, 440-45, 440-46, 440-47, 440-49, 440-57, 440-68, 440-70, 440-119, 440-136, 440-137, 440-138, 440-139, 440-140, 440-141, 440-142, 440-143, 440-145, 440-147, 440-148, 440-149, 440-150, 443-20, 451-53, 451-56, 451-60, 456, 456-1, 456-4, 463-2, 464-1, 464-3, 464-4, 1095, 1095-1~3, 1097, 1097-1~3, 1100, 1100-1, 1102, 1102-1, 1102-2, 1102-4, 1105, 1105-2, 1105-3, 1105-4, 1105-5, 1105-7, 1107, 1107-2~4, 1111, 1111-1~2, 1113, 1113-1~3, 1114, 1114-1~2, 1119(종교) |

같은 표 중 풍산동란 7통 및 8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14통에 4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에 41통부터 44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풍산동 | 7 | 1 | 풍동 562-14, 573-9·54·55, 1122, 1122-5·7~9, 1123, 1123-1~3·5, 1124, 1126, 1126-3~6, 1127, 1127-2·4·8·10·13·18~24·25~28·39·58·60·64·66·67·75·89·90 |
| | | 2 | 풍동 589-10, 590-1·8, 616-5·6·8, 655-1~3·8·10·14·27·29·62, 665, 665-1~3·5·7~9·11·14·16·18, 1145-1, 1152, 1152-1·5, 1153-1·2·4·5·9·11·12, 1154, 1154-1·3, 1155, 1156, 1156-2·3, 1157-2, 1158, 1158-1·3, 1159, 1159-3, 1160-1~6·12·16·17, 1161-1 |
| | 8 | 1 | 풍동 772~787, 789, 789-1 |
| | 14 | 4 | 풍동 377-1·2·4·5, 424-1·3·4·6·7·9, 425-1~5·9~11·13·14, 426-8, 430-1·3·6~18, 433-1~6·8, 456-1~4·6, 457-1~4·6·10·12~15, 458-1·3·14·15, 461-1~5, 462-1~6·8~18, 464-1~5·7~10, 465-1·4·5·8·11·12·15·16·18, 466-1~6, 471-1~6, 472-1~7, 482-1~14, 484-1~4, 489-1~3·7~9, 490-1·2·6·7, 491-1·2·5, 499-1~4, 500-1~10, 501-1~4·7·9, 505-1·2·4~7·9, 506-1~6·8·12, 509-1·3, 510-1·3~10, 511, 511-1~7·10·11, 513-1·2·4·6~8·10~18, 514-1~4·7·8, 515, 518-2, 519-1~9·12~15·17, 521-1·3·5~8, 524-1·3·4·6~8·10·11·13, 1061, 1062, 1066 |
| | 41 | 1 | 풍동 562-1·4·8·11·13·18·20·23·24·33·37, 572-1, 666-4·6~8, 667, 667-2·10·12·16~20·29, 1105, 1097, 1102, 1102-3, 1113-10·11, 1118, 1119, 1119-2, 1120, 1120-1·2, 1121, 1121-1·3, 1122-2·6, 1127-9·11, 1131-28, 1164 |
| | | 2 | 풍동 573-1·3·4·6·7·10·12·15·16·22·24·28·42·46, 574, 574-3, 575-1, 587-1, 589-2, 591-1·7·8·11·14·16~18, 609, 609-2·3·6·8·9, 610-1·3·7·9, 611, 611-1, 613, 613-1·3·4·9·10, 614-1·3·4·8·9·11·15, 617-4·7, 627-2·3·8·9·11~14, 1398 |
| | 42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1동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2동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3동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4동 |
| | 43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1동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2동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3동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4동 |
| | | 5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5동 |
| | 44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1동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2동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3동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4동 |

같은 표 중 장항1동란 5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24통부터 26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장항1동 | 5 | 1 | 장항동 중<br>1754~1756, 1765~1766, 1770, 1774~1775, 1785, 1785-1, 1786, 1786-1, 1789~1791, 1798, 1798-1·2, 1799~1801, 1804~1807, 1808-1·2, 1809, 1809-1, 1810, 1871~1880 |
| | | 2 | 장항동 중<br>1811-1~3, 1818-1~3, 1819-1, 1817~1820, 1821, 1821-1, 1822~1832, 1832-1~10, 1833~1838, 1838-1·2, 1839~1847, 1847-1~10, 1848~1852, 1852-1·2, 1853~1855, 1855-1, 1856, 1856-1~6, 1857~1860, 1860-1·2, 1861, 1861-1~5, 1862~1863, 1863-1·2, 1864, 1864-1~5, 1865, 1865-1~4, 1866~1870, 1881, 1883~1887 |
| | | 3 | 장항동 중<br>440-7· 8, 443-14~17, 443-20~24, 443-99, 444-17, 444-32, 506-2, 626-21, 628-7·8, 628-10·11, 630, 630-1~13, 630-15, 632, 632-1~19, 634, 634-1~15, 634-17, 634-21, 634-24~32, 634-34~47, 634-50, 634-52, 634-55~61, 634-63, 634-65, 634-69, 634-119, 634-121, 634-126·127, 634-134~138, 634-141·142, 634-145~161, 636, 636-1~14, 638, 638-1~19, 640, 640-1~17, 641-31, 642, 642-1~7, 642-10~12, 642-14·15, 642-17·18, 644, 644-1~14, 644-16, 646, 646-1~15, 648, 648-1~19, 650, 650-1~10, 652, 652-1~6, 652-8~21, 652-23, 652-27, 652-32, 653, 653-1~12, 655, 655-1~10, 655-12, 655-14~17, 655-19~28, 656, 656-1~11, 656-19~22, 656-29·30, 656-36~40, 656-44, 656-46·47, 656-49, 656-52~54, 656-56, 656-63~65, 656-68·69, 656-72~75, 656-78, 656-80, 656-83, 656-85, 657-11, 657-21, 657-141, 657-168 |
| | 24 | 1 | 고양장항 B-1블록 101동 |
| | | 2 | 고양장항 B-1블록 102동 |
| | | 3 | 고양장항 B-1블록 103동 |
| | 25 | 1 | 고양장항 B-1블록 104동 |
| | | 2 | 고양장항 B-1블록 105동 |
| | | 3 | 고양장항 B-1블록 106동 |
| | 26 | 1 | 고양장항 B-3블록 301동 |
| | | 2 | 고양장항 B-3블록 302동 |
| | | 3 | 고양장항 B-3블록 303동 |
| | | 4 | 고양장항 B-3블록 304동 |
| | | 5 | 고양장항 B-3블록 305동 |
| | | 6 | 고양장항 B-3블록 306동 |
| | | 7 | 고양장항 B-3블록 307동 |
| | | 8 | 고양장항 B-3블록 308동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 | 주민자치과 |
|---|---|---|
| 입안자 | 과 장<br>성 명 | 주민자치과장<br>유 은 숙 |
| | 팀 장<br>성 명 | 자치행정팀장<br>배 재 범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정 혜 미<br>(031-8075-2484)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성사1동 | 4 | 1 | 성사동 중<br>404-8 미도1동 101-505 | 성사1동 | 4 | 1 | 성사동 중<br>404-8 미도아파트5차 1동 101-505 |
| | | 2 | 404-8 미도1동 106-510 | | | 2 | 404-8 미도아파트5차 1동 106-510 |
| | | 3 | 404-8 미도2동 101-504 | | | 3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1-504 |
| | | 4 | 404-8 미도2동 105-508 | | | 4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5-508 |
| | | 5 | 404-8 미도2동 109-513 | | | 5 | 404-8 미도아파트5차 2동 109-513 |
| | | 6 | 404-7미도3동 101-505 | | | 6 | 404-7 미도아파트5차 3동 101-505 |
| | | 7 | 404-7미도3동 106-510 | | | 7 | 404-7 미도아파트5차 3동 106-510 |
| | | 8 | 404-7미도5동 101-505 | | | 8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01-505 |
| | | 9 | 404-7미도5동 106-510 | | | 9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06-510 |
| | | 10 | 404-7미도5동 111-515 | | | 10 | 404-7 미도아파트5차 5동 111-515 |
| | 5 | 1 | 성사동 중<br>422-3미도8동 101-505 | | 5 | 1 | 성사동 중<br>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01-505 |
| | | 2 | 422-3미도8동 106-510 | | | 2 | 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06-510 |
| | | 3 | 422-3미도8동 111-514 | | | 3 | 422-3 미도아파트7차 8동 111-514 |
| | | 4 | 422-3미도9동 101-506 | | | 4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01-506 |
| | | 5 | 422-3미도9동 107-513 | | | 5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07-513 |
| | | 6 | 422-3미도9동 114-518 | | | 6 | 422-3 미도아파트7차 9동 114-518 |
| | | 7 | 422-2 미도6동 101-510 | | | 7 | 422-2 미도아파트6차 6동 101-505 |
| | | 8 | 422-2 미도6동 106-510 | | | 8 | 422-2 미도아파트6차 6동 106-510 |
| | | 9 | 422-2 미도7동 101-505 | | | 9 | 422-2 미도아파트6차 7동 101-505 |
| | | 10 | 422-2 미도7동 106-510 | | | 10 | 422-2 미도아파트6차 7동 106-510 |
| | | 11 | 422현대그린빌라 에이·비·씨·디, 미도상가 | | | 11 | 422현대그린빌라 에이·비·씨·디, 미도상가 |
| | 6 | 3 | 성사동 706-1 능보2차 | | 6 | 3 | 성사동 706-1 능보상가연립 |
| | 11 | 2 | 705-10·21·22세인 | | 11 | 2 | 705-10·21·22세인주택 |
| | | 6 | 명립아트 | | | 6 | 703-13·14·15 명립아트빌라 |
| | 13 | 4 | 494-29(삼화아파트 에이동 101-506호) | | 13 | 4 | 494-29(삼화그린아파트 에이동 101-506호) |
| | | 5 | 494-29(삼화아파트 에이동 107-510호) | | | 5 | 494-29(삼화그린아파트 에이동 107-510호) |
| | | 6 | 494-29(삼화아파트 에이동 111-514호) | | | 6 | 494-29(삼화그린아파트 에이동 111-514호) |
| | | 7 | 494-5(삼화아파트 비동) | | | 7 | 494-5(삼화그린아파트 비동) |
| | | 8 | 494-31(삼화빌라 에이·비·씨동) | | | 8 | 494-31(삼화그린빌라 에이·비·씨동) |
| | | 9 | 494-10(명립 가동) | | | 9 | 494-10(명립주택 가동) |
| | | 10 | 494-10(명립 나동) | | | 10 | 494-10(명립주택 나동) |
| | | 11 | 494-10(명립 다동) | | | 11 | 494-10(명립주택 다동) |
| | 15 | 4 | 698-2리스아파트 | | 15 | 4 | 698-2리스맨숀 |
| | | 8 | 503초원가동 | | | 8 | 503초원연립1차가동 |
| | | 9 | 503초원나동 | | | 9 | 503초원연립1차나동 |
| | 17 | 12 | 성사동 519-25 LG타운 C동, 519-26 LG타운 B동, 519-29 LG타운 A동, 519-31·32 | | 17 | 12 | 성사동 519-25 LG주택 C동, 519-26 LG주택 B동, 519-29 LG주택 A동, 519-31·32 |
| | 19 | 1 | 주교동 중<br>616장미2차 101-504 | | 19 | 1 | 주교동 중<br>616장미아파트2차 101-504 |
| | | 2 | 616장미2차 105-508 | | | 2 | 616장미아파트2차 105-508 |
| | | 3 | 616 장미2차 109-512, 616-1·2·3·4 | | | 3 | 616장미아파트2차 109-512, 616-1·2·3·4 |
| | | 4 | 618-6서부빌라 | | | 4 | 618-6서부빌라 |
| | | 5 | 618대명 가·나·다·라동 | | | 5 | 618-7대명다세대 가·나·다·라동 |
| | | 6 | 618-5성심 가·나동 | | | 6 | 618-5성심주택 가·나동 |
| | | 7 | 618세인2차 에이·비·씨·디동, 618-2·3 | | | 7 | 618, 618-15·17·18세인다세대, 618-2·3 |
| | | 8 | 618-20금산 가동 | | | 8 | 618-20금산다세대 가동 |
| | | 9 | 618-19금산 나동 | | | 9 | 618-19금산다세대 나동 |
| | | 10 | 618-4금산 다동 | | | 10 | 618-4금산다세대 다동 |
| | | 11 | 618-8세인8차 가동 | | | 11 | 618-8세인주택 가동 |
| | | 12 | 618-30세인8차 나동 | | | 12 | 618-30세인주택 나동 |
| | | 13 | 618-33세인8차 다동 | | | 13 | 618-33세인주택 다동 |
| | | 14 | 618-34세인8차 라동 | | | 14 | 618-34세인주택 라동 |
| | | 15 | 618-35세인8차 마동 | | | 15 | 618-35세인주택 마동 |
| | | 16 | 618-9세순빌라 | | | 16 | 618-9조일다세대 |
| | | 17 | 619-4안국빌라 | | | 17 | 619-4안국빌라 |
| | | 18 | 619-1·2·3·4·5·6, 620-1·2·3·4·5·6·7·8·9 | | | 18 | 619-1·2·3·4·5·6, 620-1·2·3·4·5·6·7·8·9 |
| | 20 | 1 | 주교동 중 | | 20 | 1 | 주교동 중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 623-15삼정빌라 에이·비동 | | | | 623-15신성베스티아 105동 |
| | | 2 | 623-5청라빌라 | | | 2 | 623-5청라빌라 |
| | | 3 | 623-3성림나동 | | | 3 | 623-3성림주택 나동 |
| | | 4 | 623-21성림가동 | | | 4 | 623-21성림주택 가동 |
| | | 5 | 623-1원당1차 | | | 5 | 623-1원앙다세대 |
| | | 6 | 623-7 원당2차, 623-8(퍼스트빌4차) | | | 6 | 623-7원앙빌라2차, 623-8(퍼스트빌4차) |
| | | 7 | 623-11미성가동 | | | 7 | 623-11미성다세대 가동 |
| | | 8 | 623-13미성나동 | | | 8 | 623-13미성다세대 나동 |
| | | 9 | 623-12미성다동 | | | 9 | 623-12미성다세대 다동 |
| | | 10 | 623-16원당가동 | | | 10 | 623-16원앙빌라5차 가동 |
| | | 11 | 623-17원당나동 | | | 11 | 623-17원앙빌라5차 나동 |
| | | 12 | 623-18상록, 623-19 | | | 12 | 623-18상록주택, 623-19 |
| | | 13 | 623-6성림다동 | | | 13 | 623-6성림주택 다동 |
| | | 14 | 623-22성림바동 | | | 14 | 623-22성림주택 라동 |
| | | 15 | 622대진 | | | 15 | 622대진6차 |
| | | 16 | 622성림바동 | | | 16 | 622-12·15성림 |
| | | 17 | 621-1·2·3·4·5·6·7·8·9·10·11·12·13,<br>622-2·3·4·5·6·7·8·9·10·11·13 | | | 17 | 621-1·2·3·4·5·6·7·8·9·10·11·12·13,<br>622-2·3·4·5·6·7·8·9·10·11·13 |
| 효자동 | 1 | 1 | 북한동 중<br>산1, 산1-1, 1~543, 548, 561, 562, 566<br>574~576, 580~581, 861 | 효자동 | 1 | 1 | 북한산동 산1-1·2·3·9·10, 1~585-1 |
| | 3 | 1 | 지축동 중<br>309-1 백운아파트 2동·5동·7동 | | 3 | 1 | 지축동 중<br>307, 309-1 백운아파트 2동·5동·7동 |
| | | 3 | 지축동 중<br>산72-9, 산72-19, 산72-20, 산73-2, 산73-3,<br>산73-11, 산78 | | | 3 | 지축동 중<br>산73-11, 309-7~10, 309-12~19, 310,<br>310-1~5, 312, 312-1~6, 319-1~17, 319-19,<br>320-1~6, 321, 322-1~11, 323, 323-1~5, 324,<br>324-1~3, 325-1~4, 326, 329, 329-1~3, 332,<br>333-1~3, 367-4, 367-15, 367-17~21, 367-29,<br>368, 376-3, 378-2, 386-2 |
| | 5 | 1 | 지축동 중<br>산127-1, 산132, 산133-3, 산133-5~8,<br>산133-14, 산133-16, 산134-1~2, 산135-1~9,<br>산136, 산137-1, 산138, 산139, 산140, 산141,<br>산142-1, 산142-2, 산142-3, 산142-6,<br>산142-12, 산142-15~16, 산142-18,<br>산142-19, 산143, 산144, 산145-1~6, 산146,<br>산147, 산148-2, 산148-3, 산148-4, 산148-7,<br>산149-1, 산151-1, 산151-3, 산151-4,<br>산151-6, 산151-7, 산151-10, 산156, 산157,<br>산158, 산159-3, 산159-4, 산223, 415, 416,<br>417-5, 418-10, 519-1, 519-16, 519-17,<br>519-18, 520, 520-1, 521, 522-12, 523-7,<br>524-1~5, 525-1, 525-2, 525-6, 526, 553-1,<br>553-9, 553-10, 553-13~15, 577, 577-12,<br>579, 580-1~3, 580-9, 580-10, 580-11,<br>580-12, 587-1, 588, 588-2, 588-3, 588-7,<br>589, 589-1~4, 589-6, 589-7, 590, 591, 592,<br>592-1, 593-1~2, 593-5, 593-6, 593-7, 594,<br>594-2, 594-3, 594-4, 594-6, 594-7, 595,<br>595-7, 595-15, 596, 598, 598-2, 598-3,<br>600-2, 600-3, 601-1, 602, 603, 924(공원),<br>924-1~4, 924-6~9, 926, 926-1~12,<br>928-2~4 | | 5 | 1 | 지축동 중<br>산127-1, 산132, 산133-3, 산133-5~8,<br>산133-14, 산133-16, 산134-1~2, 산135-1~9,<br>산136, 산137-1, 산138, 산139, 산140, 산141,<br>산142-1, 산142-2, 산142-3, 산142-6,<br>산142-12, 산142-15~16, 산142-18, 산142-19,<br>산143, 산144, 산145-1~6, 산146, 산147,<br>산148-2, 산148-3, 산148-4, 산148-7, 산149-1,<br>산151-1, 산151-3, 산151-4, 산151-6, 산151-7,<br>산151-10, 산156, 산157, 산158, 산159-3,<br>산159-4, 산223, 415, 416, 417-5, 418-10,<br>553-1, 553-9, 553-10, 553-13~15, 577,<br>577-12, 579, 580-1~3, 580-9, 580-10,<br>580-11, 580-12, 587-1, 588, 588-2, 588-3,<br>588-7, 589, 589-1~4, 589-6, 589-7, 590, 591,<br>592, 592-1, 593-1~2, 593-5, 593-6, 593-7,<br>594, 594-2, 594-3, 594-4, 594-6, 594-7, 595,<br>595-7, 595-15, 596, 598, 598-2, 598-3,<br>600-2, 600-3, 601-1, 602, 603 |
| | | 2 | 지축동 중<br>산72-2, 산72-4, 산72-5, 산72-10, 산81-1,<br>산82, 산83, 산83-1, 산83-2, 산83-3, 산83-4,<br>산84, 산84-1, 산86, 산87-1, 산87-4,<br>산87-6~18, 산88-1, 산88-2, 산88-3, 산88-6,<br>산88-7, 산88-8, 산88-9, 산88-13, 산104,<br>산105, 산106-2~3, 산107-1, 산107-2,<br>산107-3, 산107-4, 산107-5, 산107-6,<br>산108-1, 산109-1, 산109-2, 산109-3,<br>산109-4, 산110, 산114-3, 산115, 산116,<br>산118, 산119, 산120-1, 산120-8, 산120-9, | | | 2 | 지축동 중<br>산72-2, 산72-4, 산72-5, 산72-10, 산81-1,<br>산82, 산83, 산83-1, 산83-2, 산83-3, 산83-4,<br>산84, 산84-1, 산86, 산87-1, 산87-4,<br>산87-6~18, 산88-1, 산88-2, 산88-3, 산88-6,<br>산88-7, 산88-8, 산88-9, 산88-13, 산104,<br>산105, 산106-2~3, 산107-1, 산107-2, 산107-3,<br>산107-4, 산107-5, 산107-6, 산108-1, 산109-1,<br>산109-2, 산109-3, 산109-4, 산110, 산114-3,<br>산115, 산116, 산118, 산119, 산120-1, 산120-8,<br>산120-9, 산126, 산126-1, 367, 367-1, 367-2,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 산126, 산126-1, 367, 367-1, 367-2, 367-3, 367-5, 367-6, 367-7, 367-8, 367-9, 367-11, 367-12, 419-2, 419-4, 419-5, 419-6, 420, 421-1, 424-13, 424-14, 424-15, 425-15, 425-20, 428-1, 429-3, 429-4, 429-5, 432, 440-30, 440-31, 440-50, 440-55, 440-56, 440-69, 440-74, 440-75, 440-76, 440-77, 440-78, 440-81, 440-94, 440-95, 440-96, 440-98, 440-99, 440-100, 440-101, 440-102, 440-103, 440-106, 440-109, 440-111, 440-112, 440-113, 440-114, 440-132, 440-133, 440-134, 440-135, 440-151, 443-1, 443-7, 443-19, 518-2, 518-5, 518-6, 518-7, 517-35, 972, 976, 976-1~5, 978, 978-1, 978-3~5, 983, 983-1~5, 986, 986-1~3 | | | 367-3, 367-5, 367-6, 367-7, 367-8, 367-9, 367-11, 367-12, 419-2, 419-4, 419-5, 419-6, 420, 421-1, 424-13, 424-14, 424-15, 425-15, 425-20, 428-1, 429-3, 429-4, 429-5, 432, 440-30, 440-31, 440-50, 440-55, 440-56, 440-69, 440-74, 440-75, 440-76, 440-77, 440-78, 440-81, 440-94, 440-95, 440-96, 440-98, 440-99, 440-100, 440-101, 440-102, 440-103, 440-106, 440-109, 440-111, 440-112, 440-113, 440-114, 440-132, 440-133, 440-134, 440-135, 440-151, 443-1, 443-7, 443-19, 518-2, 518-5, 518-6, 518-7, 517-35, 972, 974(지효초등학교), 976, 976-1~5, 978, 978-1, 978-3~5, 983, 983-1~5, 985(학교), 986, 986-1~3 |
| | | 3 | 지축동 중<br>329, 329-1, 329-2, 332, 333-1~3, 376-3, 378-2, 386-2, 1133, 1133-1~5, 1134, 1134-1~2, 1136, 1136-1~2, 1137(공), 1139, 1139-1~9, 1142, 1142-1~3, 1142-4(공), 1142-5~14, 1144, 1144-1~17, 1146, 1146-1~4, 1150(공), 1151, 1151-1~4, 1154, 1154-1~10, 1156, 1156-1~5, 1158, 1158-1~5, 1160, 1160-1~2, 1162, 1162-1, 1165 | | | 3 | 지축동 중<br>1133, 1133-1~5, 1134, 1134-1~2, 1136, 1136-1~2, 1137(공), 1139, 1139-1~9, 1142, 1142-1~3, 1142-4(공), 1142-5~14, 1144, 1144-1~17, 1146, 1146-1~4, 1150(공), 1151, 1151-1~4, 1154, 1154-1~10, 1156, 1156-1~5, 1158, 1158-1~5, 1160, 1160-1~2, 1162, 1162-1, 1165 |
| | 6 | 1 | 지축동 중<br>888, 888-1(공원), 888-2, 890공원, 890-1~6, 892, 892-1~3, 892-4(공원), 892-5~12, 894, 894-1~7, 895, 896(공원), 897, 897-1~4 | | 6 | 1 | 지축동 중<br>519-1, 519-16, 519-17, 519-18, 520, 520-1, 521, 522-12, 523-7, 524-1~5, 525-1, 525-2, 525-6, 526, 888, 888-1(공원), 888-2, 890공원, 890-1~6, 892, 892-1~3, 892-4(공원), 892-5~12, 894, 894-1~7, 895, 896(공원), 897, 897-1~4, 903(지축초등학교), 922(지축중학교), 924(공원), 924-1~4, 924-6~9, 926, 926-1~12, 928-2~4 |
| | 8 | 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1호~2803호 | | 8 | 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1호~2803호 |
| | | 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4호~2805호 | | | 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1동 104호~2805호 |
| | | 3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1호~2903호 | | | 3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1호~2903호 |
| | | 4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4호~2905호 | | | 4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2동 104호~2905호 |
| | | 5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1호~2903호 | | | 5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1호~2903호 |
| | | 6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4호~2905호 | | | 6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3동 104호~2905호 |
| | | 7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1호~2903호 | | | | |
| | | 8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4호~2905호 | | | | |
| | | 9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1호~2702호 | | | | |
| | | 10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3호~2905호 | | | | |
| | | 1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1호~2902호 | | | | |
| | | 1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3호~2905호 | | | | |
| | 19 | 1 | 지축동 중<br>472-7, 476-16, 694-1, 694-2, 694-32, 695-1, 695-6, 695-24, 695-30, 708-2, 708-4, 708-5, 708-9, 827-33, 994(공원), 996, 996-1~3, 998, 998-1, 998-2(공원), 998-3~4, 1000, 1001(공원), 1005(공원), | | 19 | 1 | 지축동 중<br>472-7, 476-16, 694-1, 694-2, 694-32, 695-1, 695-6, 695-24, 695-30, 994(공원), 996, 996-1~3, 998, 998-1, 998-2(공원), 998-3~4, 1000, 1001(공원), 1005(공원), 1005-1~2, 1005-4~9, 1007(공원), 1007-1~2, 1007-4~8,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 1005-1~2, 1005-4~9, 1007(공원), 1007-1~2, 1007-4~8, 1007-9, 1009(공원), 1057, 1057-1~3, 1057-5, 1059, 1059-1, 1060(공원), 1061 | | | | 1007-9, 1009(공원), 1057, 1057-1~3, 1057-5, 1059, 1059-1, 1060(공원), 1061 |
| | | 2 | 지축동 중<br>472-46, 472-48, 473-1~3, 473-8, 685-2, 685-4, 693-1, 693-5, 693-6, 694-18, 694-21~23, 694-27, 694-35, 695-9, 699-1, 702-4, 702-9, 703-5, 704-7, 704-8, 704-17, 704-18, 704-22, 705-1, 705-6, 705-7, 705-8, 706-1, 706-2, 706-4, 706-5, 706-6, 708-3, 709, 709-1, 827-10, 1017, 1017-1~9, 1019, 1019-1, 1019-3~10, 1021, 1021-1~9, 1026-2, 1028, 1028-1~10, 1030, 1030-1~11, 1032, 1032-1~11, 1034-1, 1034-2, 1038-1(공원), 1040, 1040-1~3, 1041, 1041-1~9, 1043, 1043-1~11, 1044, 1044-1~2, 1048 | | | 2 | 지축동 중<br>472-46, 472-48, 473-1~3, 473-8, 685-2, 685-4, 693-1, 693-5, 693-6, 694-18, 694-21~23, 694-27, 694-35, 695-9, 699-1, 702-4, 702-9, 703-5, 704-7, 704-8, 704-17, 704-18, 704-22, 705-1, 705-6, 705-7, 705-8, 706-1, 706-2, 706-4, 706-5, 706-6, 708-3, 709, 709-1, 827-10, 1017, 1017-1~9, 1019, 1019-1, 1019-3~10, 1021, 1021-1~9, 1026-2, 1028, 1028-1~10, 1030, 1030-1~11, 1032, 1032-1~11, 1034-1, 1034-2, 1038-1(공원), 1040, 1040-1~3, 1041, 1041-1~9, 1043, 1043-1~11, 1044, 1044-1~2, 1048 |
| | | 3 | 지축동 중<br>471, 472-26, 472-29, 472-30, 472-40, 472-58, 476-3, 476-6, 476-7, 476-21, 476-25, 476-27, 476-30, 476-38, 476-40, 476-46, 476-47, 476-54, 480-1, 480-8, 480-9, 481, 482, 482-2, 483, 483-2, 484, 486-1, 486-5, 486-8, 486-9, 487-5, 487-29, 487-30, 487-37, 488-2, 488-8, 708-2, 708-4, 708-5, 708-9, 827-33, 1063(공원), 1070-1~2, 1072, 1072-1, 1074, 1074-1~5, 1076, 1076-1~4, 1078(종교), 1078-1(공원), 1080, 1080-1~11, 1082, 1082-1~8 | | | | |
| | | 4 | 지축동 중<br>산90, 440-32, 440-33, 440-34, 440-35, 440-39, 440-44, 440-45, 440-46, 440-47, 440-49, 440-57, 440-68, 440-70, 440-119, 440-136, 440-137, 440-138, 440-139, 440-140, 440-141, 440-142, 440-143, 440-145, 440-147, 440-148, 440-149, 440-150, 443-20, 451-53, 451-56, 451-60, 456, 456-1, 456-4, 463-2, 464-1, 464-3, 464-4, 1095, 1095-1~3, 1097, 1097-1~3, 1100, 1100-1, 1102, 1102-1, 1102-2, 1102-4, 1105, 1105-2, 1105-3, 1105-4, 1105-5, 1105-7, 1107, 1107-2~4, 1111, 1111-1~2, 1113, 1113-1~3, 1114, 1114-1~2, 1119(종교) | | | | |
| | 20 | 1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1동 2층~14층 | | 20 | 1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1동 2층~14층 |
| | | 2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2동 1층~11층 | | | 2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2동 1층~11층 |
| | | 3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2동 12층~21층 | | | 3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2동 12층~21층 |
| | | 4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3동 2층~9층 | | | 4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3동 2층~9층 |
| | | 5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3동 10층~16층 | | | 5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3동 10층~16층 |
| | | 6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4동 1층~11층 | | | 6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4동 1층~11층 |
| | | 7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4동 12층~21층 | | | 7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4동 12층~21층 |
| | | 8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5동 1층~8층 | | | 8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5동 1층~8층 |
| | | 9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5동 9층~16층 | | | 9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5동 9층~16층 |
| | | 10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6동 1층~8층 | | | 10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6동 1층~8층 |
| | | 11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6동 9층~15층 | | | 11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6동 9층~15층 |
| | | 12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7동 1층~8층 | | | 12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7동 1층~8층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13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7동 9층~16층 | | | 13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7동 9층~16층 |
| | | 14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8동 1층~10층 | | | 14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8동 1층~10층 |
| | | 15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8동 11층~20층 | | | 15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8동 11층~20층 |
| | | 16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9동 1층~11층 | | | 16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9동 1층~11층 |
| | | 17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09동 12층~21층 | | | 17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09동 12층~21층 |
| | | 18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10동 1층~8층 | | | 18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10동 1층~8층 |
| | | 19 | 지축동 968 지축역 수피움 210동 9층~16층 | | | 19 | 지축동 968 지축역아테라 210동 9층~16층 |
| | | | <신 설> | | 22 | 1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1호~2903호 |
| | | | | | | 2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4동 104호~2905호 |
| | | | | | | 3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1호~2702호 |
| | | | | | | 4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5동 103호~2905호 |
| | | | | | | 5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1호~2902호 |
| | | | | | | 6 | 지축동 904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106동 103호~2905호 |
| | | | <신 설> | | 23 | 1 | 지축동 중 471, 472-26, 472-29, 472-30, 472-40, 472-58, 476-3, 476-6, 476-7, 476-21, 476-25, 476-27, 476-30, 476-38, 476-40, 476-46, 476-47, 476-54, 480-1, 480-8, 480-9, 481, 482, 482-2, 483, 483-2, 484, 486-1, 486-5, 486-8, 486-9, 487-5, 487-29, 487-30, 487-37, 488-2, 488-8, 708-2, 708-4, 708-5, 708-9, 827-33, 1063(공원), 1070-1~2, 1072, 1072-1, 1074, 1074-1~5, 1076, 1076-1~4, 1078(종교), 1078-1(공원), 1080, 1080-1~11, 1082, 1082-1~8 |
| | | | | | | 2 | 지축동 중 산90, 440-32, 440-33, 440-34, 440-35, 440-39, 440-44, 440-45, 440-46, 440-47, 440-49, 440-57, 440-68, 440-70, 440-119, 440-136, 440-137, 440-138, 440-139, 440-140, 440-141, 440-142, 440-143, 440-145, 440-147, 440-148, 440-149, 440-150, 443-20, 451-53, 451-56, 451-60, 456, 456-1, 456-4, 463-2, 464-1, 464-3, 464-4, 1095, 1095-1~3, 1097, 1097-1~3, 1100, 1100-1, 1102, 1102-1, 1102-2, 1102-4, 1105, 1105-2, 1105-3, 1105-4, 1105-5, 1105-7, 1107, 1107-2~4, 1111, 1111-1~2, 1113, 1113-1~3, 1114, 1114-1~2, 1119(종교) |
| 풍산동 | 7 | 1 | 풍동 562-1·4·8·11·13·18·20·23·24·33·37, 572-1, 666-5~8, 667, 667-2·10·12·16~20·29, 1105, 1097, 1118, 1119, 1120, 1121-1, 1122-2·6, 1127-11, 1164 | 풍산동 | 7 | 1 | 풍동 562-14, 573-9·54·55, 1122, 1122-5·7~9, 1123, 1123-1~3·5, 1124, 1126, 1126-3~6, 1127, 1127-2·4·8·10·13·18~24·25~28·39·58·60·64·66·67·75·89·90 |
| | | 2 | 풍동 573-1·3·4·6·7·10·12·15·16·22·24·28·42·46, 574, 575-1, 587-1, 589-2, 591-1·7·8·11·14·16~18, 609, 609-2·3·6·8·9, 610-1·3·7·9, 611, 611-1, 613, 613-1·3·4·9·10, 614-1·3·4·8·9·11·15, 617-4·7, 627-2·3·8·9·11~14, 1398 | | | 2 | 풍동 589-10, 590-1·8, 616-5·6·8, 655-1~3·8·10·14·27·29·62, 665, 665-1~3·5·7~9·11·14·16·18, 1145-1, 1152, 1152-1·5, 1153-1·2·4·5·9·11·12, 1154, 1154-1·3, 1155, 1156, 1156-2·3, 1157-2, 1158, 1158-1·3, 1159, 1159-3, 1160-1~6·12·16·17, 1161-1 |
| | | 3 | 풍동 562-14, 573-9, 1122, 1122-5·7~9, 1123, 1123-1~3·5, 1124, 1126, 1126-3~6, 1127, 1127-2·4·8·10·13·18~23·25~28·39·58·60·64·66·67·75·89·90 | | | | |
| | | 4 | 풍동 589-10, 590-1·8, 616-5·6·8, 655-1~3·8·10·14·27·29·62, 665, 665-1~3·5·7~9·11·14·16·18, 1145-1, 1152, | | |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 1152-1·5, 1153-1·2·4·5·9·11·12, 1154, 1154-1·3, 1155, 1156, 1156-2·3, 1157-2, 1158, 1158-1·3, 1159, 1159-3, 1160-1~6·12, 1161-1 | | | | |
| | 8 | 1 | 풍동 377-1·2·4·5, 424-1·3·4·6·7·9, 425-1~5·9~11·13·14, 430-1·3·6~18, 433-1~6·8, 456-1~4·6, 457-1~4·6·10·12~15, 458-1~4·12~15, 461-1~5, 462-1~6·8~18, 464-1~5·7~10, 465-1·4·5·8·11·12·15·16·18, 466-1~6, 471-1~6, 472-1~7, 482-1~14, 484-1~4, 489-1~3·7~9, 490-1·2·6·7, 491-1·2·5, 499-1~4, 500-1~10, 501-1~4·7·9, 505-1·2·4~7·9, 506-1~6·8·12, 509-1·3, 510-1·3~10, 511, 511-1~7·10·11, 513-1·2·4·6~8·10~18, 514-1~4·7·8, 515, 518-2, 519-1~9·12~15·17, 521-1·3·5~8, 524-1·3·4·6~8·10·11·13, 1061, 1062, 772~787, 789 | | 8 | 1 | 풍동 772~787, 789, 789-1 |
| | 14 | | <신 설> | | 14 | 4 | 풍동 377-1·2·4·5, 424-1·3·4·6·7·9, 425-1~5·9~11·13·14, 426-8, 430-1·3·6~18, 433-1~6·8, 456-1~4·6, 457-1~4·6·10·12~15, 458-1·3·14·15, 461-1~5, 462-1~6·8~18, 464-1~5·7~10, 465-1·4·5·8·11·12·15·16·18, 466-1~6, 471-1~6, 472-1~7, 482-1~14, 484-1~4, 489-1~3·7~9, 490-1·2·6·7, 491-1·2·5, 499-1~4, 500-1~10, 501-1~4·7·9, 505-1·2·4~7·9, 506-1~6·8·12, 509-1·3, 510-1·3~10, 511, 511-1~7·10·11, 513-1·2·4·6~8·10~18, 514-1~4·7·8, 515, 518-2, 519-1~9·12~15·17, 521-1·3·5~8, 524-1·3·4·6~8·10·11·13, 1061, 1062, 1066 |
| | | | <신 설> | | 41 | 1 | 풍동 562-1·4·8·11·13·18·20·23·24·33·37, 572-1, 666-4·6~8, 667, 667-2·10·12·16~20·29, 1105, 1097, 1102, 1102-3, 1113-10·11, 1118, 1119, 1119-2, 1120, 1120-1·2, 1121, 1121-1·3, 1122-2·6, 1127-9·11, 1131-28, 1164 |
| | | | | | | 2 | 풍동 573-1·3·4·6·7·10·12·15·16·22·24·28·42·46, 574, 574-3, 575-1, 587-1, 589-2, 591-1·7·8·11·14·16~18, 609, 609-2·3·6·8·9, 610-1·3·7·9, 611, 611-1, 613, 613-1·3·4·9·10, 614-1·3·4·8·9·11·15, 617-4·7, 627-2·3·8·9·11~14, 1398 |
| | | | <신 설> | | 42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1동 |
| | |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2동 |
| | |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3동 |
| | |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104동 |
| | | | <신 설> | | 43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1동 |
| | |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2동 |
| | |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3동 |
| | |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4동 |
| | | | | | | 5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205동 |
| | | | <신 설> | | 44 | 1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1동 |
| | | | | | | 2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2동 |
| | | | | | | 3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3동 |
| | | | | | | 4 | 일산e편한세상메이포레 304동 |
| 장항1동 | 5 | 1 | 장항동 924~938, 948~991, 1001~1018, 1024~1026, 1030, 1034, 1044~1047, 1058, 1058-1~2, 1069, 1069-1, 1070~1078, 1079-1~2, 1080, 1082, 1083, 1085~1111, 1113~1116, 1140~1171, 1180, 1182, 1185~1188, 1194~1197, 1199~1206, 1210, 1226-2, 1227~1229, 1240~1241, 1244~1253, 1255~1259, 1261~1274, 1276, 1278~1298, 1300~1313, 1319-1~4, 1320-1, 1325-1~7, | 장항1동 | 5 | 1 | 장항동 중 1754~1756, 1765~1766, 1770, 1774~1775, 1785, 1785-1 1786, 1786-1, 1789~1791, 1798, 1798-1·2, 1799~1801, 1804~1807, 1808-1·2, 1809, 1809-1, 1810, 1871~1880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 (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 | | 1325-9~24, 1328, 1344, 1354, 1354-1 | | | | |
| | | 2 | 장항동 중<br>464, 466-1·2, 626-9, 627, 627-3, 629, 629-1~8, 629-10~21, 631, 631-1~18, 633, 633-1~13, 635, 635-1~21, 637, 637-1~23, 639, 639-1~16, 641, 641-1~20, 643, 643-1~16, 645, 645-1~23, 647, 647-1~24, 649, 649-1~24, 651, 651-1~9, 654, 654-1~15 | | | 2 | 장항동 중<br>1811-1~3, 1818-1~3, 1819-1, 1817~1820, 1821, 1821-1, 1822~1832, 1832-1~10, 1833~1838, 1838-1·2, 1839~1847, 1847-1~10, 1848~1852, 1852-1·2, 1853~1855, 1855-1, 1856, 1856-1~6, 1857~1860, 1860-1·2, 1861, 1861-1~5, 1862~1863, 1863-1·2, 1864, 1864-1~5, 1865, 1865-1~4, 1866~1870, 1881, 1883~1887 |
| | | 3 | 장항동 중<br>390-3, 440, 443~444, 626, 626-1·2, 628, 629-1~7, 630, 630-1~10, 6632-1~17, 634, 634-1~58, 636, 636-1~13, 638, 638-1~17, 640, 640-1~10, 642, 642-1~6, 644, 644-1~13, 646, 646-1~10, 648, 648-1~14, 650, 650-1~10, 652~653, 653-1~8, 655, 655-1~15, 656, 656-1~10, 656-19~22, 656-29·30 | | | 3 | 장항동 중<br>440-7·8, 443-14~17, 443-20~24, 443-99, 444-17, 444-32, 506-2, 626-21, 628-7·8, 628-10·11, 630, 630-1~13, 630-15, 632, 632-1~19, 634, 634-1~15, 634-17, 634-21, 634-24~32, 634-34~47, 634-50, 634-52, 634-55~61, 634-63, 634-65, 634-69, 634-119, 634-121, 634-126·127, 634-134~138, 634-141·142, 634-145~161, 636, 636-1~14, 638, 638-1~19, 640, 640-1~17, 641-31, 642, 642-1~7, 642-10~12, 642-14·15, 642-17·18, 644, 644-1~14, 644-16, 646, 646-1~15, 648, 648-1~19, 650, 650-1~10, 652, 652-1~6, 652-8~21, 652-23, 652-27, 652-32, 653, 653-1~12, 655, 655-1~10, 655-12, 655-14~17, 655-19~28, 656, 656-1~11, 656-19~22, 656-29·30, 656-36~40, 656-44, 656-46·47, 656-49, 656-52~54, 656-56, 656-63~65, 656-68·69, 656-72~75, 656-78, 656-80, 656-83, 656-85, 657-11, 657-21, 657-141, 657-168 |
| | | | **<신 설>** | | 24 | 1 | 고양장항 B-1블록 101동 |
| | | | | | | 2 | 고양장항 B-1블록 102동 |
| | | | | | | 3 | 고양장항 B-1블록 103동 |
| | | | **<신 설>** | | 25 | 1 | 고양장항 B-1블록 104동 |
| | | | | | | 2 | 고양장항 B-1블록 105동 |
| | | | | | | 3 | 고양장항 B-1블록 106동 |
| | | | **<신 설>** | | 26 | 1 | 고양장항 B-3블록 301동 |
| | | | | | | 2 | 고양장항 B-3블록 302동 |
| | | | | | | 3 | 고양장항 B-3블록 303동 |
| | | | | | | 4 | 고양장항 B-3블록 304동 |
| | | | | | | 5 | 고양장항 B-3블록 305동 |
| | | | | | | 6 | 고양장항 B-3블록 306동 |
| | | | | | | 7 | 고양장항 B-3블록 307동 |
| | | | | | | 8 | 고양장항 B-3블록 308동 |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7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황판단회의에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소관 부서장을, 대책본부회의에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 및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0조

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43조제5항).

## 4. 자치법규안: 별첨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 031-8075-3012
- 팩 스: 031-8075-499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실·국·소장”을 “실장·국장·소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실·국·소장”을 각각 “실장·국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재난대응담당관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재난대응담당관<br>정 태 호 |
| | 팀 장<br>성 명 | 사회재난팀장<br>유 병 준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이 영 수<br>(031-8075-3012)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생 략)<br>1.·2. (생 략)<br>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br>4. ~ 6. (생 략)<br>②·③ (생 략)<br><신 설> |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br>1.·2. (현행과 같음)<br>3. ----------실장·국장·소장----------<br>4. ~ 6.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br>제10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br>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br>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br>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br>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 ⑦ 제1항 및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
|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 략) |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 부서의 장 |
| <신 설> |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 부서의 장 |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국·소장 및 과장 | ② ---------- ---------- ---------- ------ 실장·국장·소장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
| 1. 시 공무원의 조직 및 복무 업무담당 실·국·소장 | 1. ---------- 실장·국장·소장 |
|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실·국·소장 | 2. ---------- 실장·국장·소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 **<신 설>** |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8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다.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8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6
- 팩 스: 031-8075-4916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7.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청소년 업무 담당 실장·국장,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 청소년 대표
2.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의업무”를 “심의 업무”로, “야기한 때”를 “일으킨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때에는부위원장”를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하반기”를 “상반기 · 하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척하여야”를 “제척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자문된”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청소년관계전문가,”를 “청소년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 소 관 부 서 | | 여성가족과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여성가족과장<br>윤 순 희 |
| | 팀 장<br>성 명 | 청소년팀장<br>문 정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김 수 진<br>(031-8075-2286)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br>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br>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br>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 제2조(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br>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br>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관한 사항<br>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br>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br>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br>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br>9. 삭 제<br>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br>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br>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br>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br>7.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br>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br>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 ---------- 구성한다. |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 호선(互選)---.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청소년 업무 담당 실장·국장,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 1. 고양시 청소년 대표 |
| 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 | 2.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
|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
|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
|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
|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
|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8. 고양시 청소년 대표<br>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br>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8.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br>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 | 제5조(위원의 해촉) ---------- ---------- 해당하는 경우----------.<br>1.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않은 경우 |
|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 2. 심의 업무---------- 일으킨 경우 |
|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 | 3. ----------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4. ---------- 판단 되는 경우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사유로 ---------- 때에는 부위원장----------.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 상반기・하반기 ---------- ----------.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개의(開議)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④ ---------- 갖춰 두어야 --. |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 소집하려는 ---------- -----. ---- 긴급하거나 ---------- 그렇지 않다. |
| ⑥ 제2조제9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⑥ ---------- 미리 ---------- --. ---------- -- 제척해야 ----.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⑦ ----------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2. 그 밖에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
|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 --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 |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한다. | |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9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 설치 예정인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월 30만원) 추가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 031-8075-2386
- 팩 스: 031-8075-489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과 관련하여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양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인적자원과 |
|---|---|---|
| 입<br>안<br>자 | 부 서 장<br>성 명 | 인적자원과장<br>최 규 형 |
| | 팀 장<br>성 명 | 인사팀장<br>고 경 진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안 용 섭<br>(031-8075-2386)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과 관련하여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양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0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독반의 구성, 감독의 실시·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031-8075-3459
- 팩 스: 031-8075-4954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집합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한 연장 사유서에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과정에서 관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결과 통보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결과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독의 중지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건축정책과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건축정책과장<br>김 진 원 |
| | 팀 장<br>성 명 |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br>권 호 영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김 성 열<br>(031-8075-3459) |

[별지 제1호서식]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제4조 관련)

| | | | | |
|---|---|---|---|---|
| 신 청 인<br>(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연락처: ) | | |
| 관 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임 기 | | | |
| 건 축 물<br>현 황 | 건물명칭 | | 용 도 | |
| | 위 치 | | 세대/호수 | |
| | 연면적 | ㎡ | 층 수 | 지상 층<br>지하 층 |

| | |
|---|---|
| 신청분야 |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br>□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br>□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
| 신청내용 |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br>2.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별지 제2호서식]

# 감독신청인 연명부(제4조 관련)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안내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신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독을 신청한 날부터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명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 서명 또는 인 | 신청구분 |
|---|---|---|---|---|---|---|---|
| 1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2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3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4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5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6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7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8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9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 10 | | | | | □ 동의<br>□ 미동의 | | 구분소유자,<br>점유자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동의합니다.

**고양시장** 귀하

|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 기한 연장 사유서(제6조 관련)

| | | | | |
|---|---|---|---|---|
| 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임 기 | | 연락처 | |
| 건 축 물 현 황 | 건물명칭 | | 용 도 | |
| | 위 치 | | 세대/호수 | |
| | 연면적 | ㎡ | 층 수 | 지상 층 |
| | | | | 지하 층 |
| 보고 및 자료 제출 | 당초 기한: 연장 요청일: | | | |

| | |
|---|---|
| 기한 연장 사유 |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

| | | | | | |
|---|---|---|---|---|---|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성명 | 김성열 |
| | 국장 | 김수오 | | 직급 | 시설7급 |
| | 과장 | 김진원 | | 연락처 | 031-8075-3459 |
| | 팀장 | 권호영 | | 이메일 | fill56@korea.kr |

##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 colspan="4">1. 감독대상의 선정 / 2. 감독의 신청 / 3. 감독의 실시</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신설</td><td>강화</td><td>존속기한연장</td><td>내용심사</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4">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td></tr>
<tr><td colspan="4">국장: 김수오 / 과장: 김진원 / 팀장: 권호영 / 담당자: 김성열</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유 ■ 무</td></tr>
<tr><td>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br>•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집합건물법」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함<br>• 제4조(감독의 신청) :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건 및 보완 절차를 규정함<br>• 제6조(감독의 실시) :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기한 연장 및 보완 요청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함<br><br>○ (조례 제정안)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br>제 정 안<br>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집합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br>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br>2.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br>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br>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td></tr>
</table>

| | |
|---|---|
| |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br>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br>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br>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br>**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br>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br>3.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br>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br><br>**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br>④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한 연장 사유서에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br>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br>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 3. 28.)에 따라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이 신설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조례를 통해 법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과 공동체 내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조항 |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
| 제3조 | **(비용)** 감독 제외 대상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개별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비용 발생.<br>**(편익)** 감독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행정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br>**(비용과 편익 비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적 자치의 원칙 준수 및 행정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익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 제4조 | **(비용)** 감독의 신청 규정에 의한 신청서·연명부 및 증명자료 구비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br>**(편익)** 무분별하고 남발되는 감독 신청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다수의 공감대 형성 및 공식적 권리행사 기회 보장 .<br>**(비용과 편익 비교)** 감독 신청에 따른 서류 구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행정력 남용 방지 및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익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 제6조 | **(비용)** 시장의 자료 제출 명령 이행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인의 행정적·업무적 부담 발생.<br>**(편익)** 집합건물의 운영 실태 등이 투명하게 공개·개선되며,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br>**(비용과 편익 비교)** 집합건물 관리인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나,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다수의 구분소유자·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집합건물 감독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을 조례에서 규정함.

○ 경기도 내 타시군 조례에도 관련 규제에 대한 기준이 규정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타시군 조례 현황

| 항목 / 시·군·구(제정일) | 감독대상의 선정 | 감독의 신청 | 감독의 실시 |
|---|---|---|---|
| 의정부시 (2023. 11. 10.) | O | O | O |
| 시흥시 (2024. 2. 8.) | O | O | O |
| 부천시 (2024. 12. 23.) | O | O (점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 | O |
| 양주시 (2025. 1. 20.) | O | O | O |
| 김포시 (2025. 4. 9.) | O | O | O |
| 성남시 (2025. 5. 1.) | X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대한 대상 기준 규정) | X (시장 직권 감독 실시) | O |
| 여주시 (2025. 6. 30.) | O | O | O |

| | | | |
|---|---|---|---|
| 수원시<br>(2025. 7. 10.) | O | O | O |
| 안양시<br>(2025. 7. 15.) | O | O | O |
| 파주시<br>(2025. 7. 18.) | O | O | O |
| 용인시<br>(2025. 9. 26.) | O | O | O |
| 동두천시<br>(2025. 9. 30.) | O | O | O |
| 하남시<br>(2025. 10. 2.) | O | O | O |
| 광명시<br>(2026. 4. 17.) | O | O<br>(점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 | O |
| 군포시<br>(2026. 4. 22.) | O | O | O |

##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ㅇ (행정기구·인력) 담당 부서(각 구청 집합건물 담당팀)의 감독 업무 수행을 통해 처리 가능.
- ㅇ (예산의 소요) 감독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추경을 통하여 예산 확보 추진.

##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ㅇ (구비서류) 감독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분별하고 남발되는 감독 신청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서류로 구성되어 적정함.
- ㅇ (처리기간) 관리인의 자료 제출 기한과 기한 연장 절차를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합리성을 확보함.
- ㅇ (처리절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투명한 행정 지도·감독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는 적정함.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2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건축법」 제53조제2항 신설(2023. 12. 26.)로 단독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

하는 실장·국장,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다. 지하층 거실의 설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5년)을 신설함(안 제48조).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방법 정비(안 별표 3)

-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고정 비율(30%~300%) 적용 방식에서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정비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031-8075-3158
- 팩 스: 031-8075-4954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를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을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업무 담당 실장·국장을 부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며,”를 “대표하며,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영 제2조제17의2호”를 “영 제2조제17호의2”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를 “시장이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각각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을 “심의 및 재심의 신청, 간략설계도서, 심의절차, 심의결과 통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를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2조의4 및”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을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을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실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실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을 “위원 및”으로, “업무수행 상”을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의결로”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 등”을 “건축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민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비밀 준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대행시”를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 업무”를 “확인업무”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

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

제40조제1항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 관 부 서 | | 건축정책과 |
|---|---|---|
| 입<br>안<br>자 | 부 서 장<br>성 명 | 건축정책과장<br>김 진 원 |
| | 팀 장<br>성 명 | 건축정책팀장<br>허 창 우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추 민 경<br>(031-8075-3158) |

[별표 3]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8조 관련)

## 1. 대행 수수료 산정 방법

대행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수수료 지급률}
+ 부가가치세(10퍼센트)

가. 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 부문 기술사의 1일 노임단가(수수료 지급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을 말한다)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제2호의 대행 소요시간

나.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의 5퍼센트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퍼센트

마. 수수료 지급률

1) 건축허가 시: 30퍼센트

2) 사용승인 시: 7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 시: 7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한 차례만 지급한다)

## 2. 대행 소요시간

제1호에 따른 대행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건축물 연면적 | 대행 소요시간 |
|---|---|
| 330제곱미터 미만 | 3시간 |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6시간 |
|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7시간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시간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17시간 |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0시간 |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26시간 |
|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8시간 |
| 30만제곱미터 이상 | 32시간 |

※ 비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대행 소요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br>----------<br>----------<br>----------.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br>----------<br>----------<br>----------<br>----------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br>----------<br>----------<br>----------<br>----------<br>----------<br>----------<br>----------<br>----------.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구성) ① (생 략) |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 ② 시장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 건축업무·주택업무·재정비업무 담당 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으로, 건축업무 담당 실장·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br>----------<br>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촉직 ----------<br>------- 하며, ----------<br>----------. |
| ⑤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 <삭 제>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 대표하며, 건축위원회의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8조(기능) ① (생 략) |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영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정한다) | 나. 영 제2조제17호의2---------- |
| 다. ~ 아. (생 략) | 다. ~ 아.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회의) ①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9조(운영) ① ---------- 시장이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거나 ----------. |
|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 회의 개최 ---------- 회의 개최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렇지 않다. |
| ③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 ----------- ----- 심의 및 재심의 신청, 간략설계도서, 심의절차, 심의결과 통보---------- 않은 ---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 -----. |
| ④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15일) ---------- ----------. --, 긴급하거나 ---------- ----------. |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⑤ ---------- ----------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 -------. |
| **<신 설>** | ⑥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로 한다. |
| 제12조(소위원회) ①·② (생 략) | 제12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실장·국장 ----------.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② (생 략)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실장·국장 ----------.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비밀준수) ---------- 위원 및 ----------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누설해서는 안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6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
|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 ---------- 건축등-----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민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실장이 된다. |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 ---------- ---------- --- 실장·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br>④ 그 밖의 민원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그 밖에 민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비밀준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 ---------- ---------- ---------- ------ 확인업무 ---------- ---------- ---------- ---------- ---------- 지급해야 한다. --, ---------- ---------- ---------- ---------- ---------- 않는다. |
| 제30조(감리자의 대가기준)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전년도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 제30조(감리자의 대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br>② ---------- ---------- ---------- 한국부동산원---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br>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br>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 |
|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일반 미관지구 | 제40조(맞벽건축) ① ---------- ---------- 경관지구-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맞벽건축을 허용한 구역으로 한다.<br>② (생 략)<br><신 설> | ----------<br>----------<br>----------<br>-----.<br>② (현행과 같음)<br>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현 행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연면적별 기준단가(제28조 관련)**

| 연면적 | 허가전 |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 |
|---|---|---|---|
| 495㎡(주거용은 660㎡) 미만 | 대가기준의 30% | 대가기준의 40% | 대가기준의 50% |
| 495㎡(주거용은 660㎡) 이상 1,000㎡ 미만 | 대가기준의 50% | 대가기준의 60% | 대가기준의 75% |
| 1,000㎡ 이상 5,000㎡ 미만 | 대가기준의 60% | 대가기준의 80% | 대가기준의 100% |
| 5,000㎡ 이상 10,000㎡ 미만 | 대가기준의 90% | 대가기준의 120% | 대가기준의 150% |
| 10,000㎡ 이상 30,000㎡ 미만 | 대가기준의 120% | 대가기준의 160% | 대가기준의 200% |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대가기준의 150% | 대가기준의 200% | 대가기준의 250% |
| 100,000㎡이상 | 대가기준의 180% | 대가기준의 240% | 대가기준의 300% |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 개 정 안

[별표 3]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8조 관련)**

1. 대행 수수료 산정 방법

대행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수수료 지급률｝ + 부가가치세(10퍼센트)

가. 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 부문 기술사의 1일 노임단가(수수료 지급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을 말한다)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제2호의 대행 소요시간

나.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의 5퍼센트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퍼센트

마. 수수료 지급률

1) 건축허가 시: 30퍼센트

2) 사용승인 시: 7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 시: 7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한 차례만 지급한다)

2. 대행 소요시간

제1호에 따른 대행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별 소요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건축물 연면적 | 대행 소요시간 |
|---|---|
| 330제곱미터 미만 | 3시간 |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6시간 |
|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7시간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시간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17시간 |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0시간 |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26시간 |
|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8시간 |
| 30만제곱미터 이상 | 32시간 |

※ 비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대행 소요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 | | | | |
|---|---|---|---|---|---|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성명 | 추민경 |
| | 실장 | 김수오 | | 직급 | 시설7급 |
| | 과장 | 김진원 | | 연락처 | 031-8075-3158 |
| | 팀장 | 허창우 | | 이메일 | miniimk@korea.kr |

##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 colspan="4">지하층 거실의 설치</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신설</td><td>강화</td><td>존속기한연장</td><td>내용심사</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4">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td></tr>
<tr><td colspan="4">실장: 김수오 / 과장: 김진원 / 팀장: 허창우 / 담당자: 추민경</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건축법」 제53조제2항<br>○「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관내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및 설계자(건축사)</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유 □ 무 (재검토기한: 2027. 1. 1. 기준 5년마다, 안 제48조)</td></tr>
<tr><td>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침수위험 등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주거 안전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를 정하도록 위임함.<br><br>○ 우리 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침수 우려가 없는 경사지 단독주택 등도 일률적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단독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함(조례 제31조의2)<br>⇒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br>＊ 대상:「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공관 제외)<br><br>○ (조례 개정안) 고양시 건축 조례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br>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br>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td></tr>
</table>
</td></tr>
</table>

| | | |
|---|---|---|
| | <신 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ㅇ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신설(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되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됨.
- ㅇ 같은 항 단서에서 침수위험 등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주거 안전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침수 우려가 없는 경사지 단독주택 등도 일률적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ㅇ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침수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ㅇ 요건 없이 허용할 경우 반지하 주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 ㅇ 신설 요건은 「건축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 **(침수 방지)** 거실 한 면 이상 외부 노출, 거실 바닥면이 노출면에 접한 지면보다 높을 것, 배수설비 설치
* **(피난 확보)** 지상층과 같은 가구로 구성,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
  ➜ 독립된 반지하 세대 형성을 막고, 유사시 지상 대피 경로 확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한정)

##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 요건 충족을 위한 외부 노출·배수설비·내부 계단 등 설계 반영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지하층 거실 설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현행(설치 불가) 대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편익)**
  ※ 침수·피난 안전이 확보된 단독주택의 지하층 공간을 거실로 활용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주거공간 활용도 제고.
  ※ 반지하 독립 세대 형성을 방지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허용 기준 명확화로 행정의 일관성 제고.
- **(비용과 편익 비교)**
  ※ 규제 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함.
  ※ 반면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거주자의 주거 안전 확보 편익이 큼.
  ※ 따라서 규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

##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사항 없음

##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침수위험, 피난·대피 가능성, 주거안전)을 요건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외부 노출 여부, 바닥면 높이, 배수설비, 내부 계단 연결 등 설계도서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

❑「건축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타시군 조례 현황(건축 조례)

| 연번 | 시군명 | 조례 문구 |
|---|---|---|
| 1 | 성남시 | **제18조의6(지하층의 거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 | 용인시 | **제26조의2(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의 구조)**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6〕<br>1. 영 제34조제1항의 피난층인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로서 허가권자가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br>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br>3.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
| 3 | 하남시 | **제23조의3(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br>1. 경사지에 설치된 거실로서 피난 또는 침수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br>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br>3. 건축물 지하층 및 지상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준하여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주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br>4.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

##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ㅇ 건축허가·신고 시 설계도서 검토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소요 없음.

##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ㅇ 기존 건축허가·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평면도·단면도·배수계획 등)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능.
- ㅇ 지하층 거실 설치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ㅇ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가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민원사무 처리는 적정함.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6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북한산의 상징성을 담아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법정동 '북한동'의 명칭을 '북한산동'으로 변경하고,

○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 및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함(안 제2조 및 별표 1).

나. 법정동 '북한동'을 '북한산동'으로 변경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민자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031-8075-2484
- 팩 스: 031-8075-496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양시 구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양시 구와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고양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구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의 덕양구 효자동란 중 “북한동”을 “북한산동”으로 한다.

| 소 관 부 서 | | 주민자치과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주민자치과장<br>유 은 숙 |
| | 팀 장<br>성 명 | 자치행정팀장<br>배 재 범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정 혜 미<br>(031-8075-2484) |

[별표 1]

# 고양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제1항 관련)

| 시 명 | 구 명 | 관할구역(법정동) |
|---|---|---|
| 고양시 | 덕양구 | 주교동, 성사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북한산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토당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행신동, 강매동, 향동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32개 동) |
| | 일산동구 |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동, 산황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13개 동) |
| | 일산서구 | 일산동,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법곳동,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8개 동) |

[별표 2]

# 고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제2항 관련)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주교동 | 주교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1348-3·4·5·6·7·9를 제외한 전 지역 |
| | 성사동 | 성사동 일원, 주교동에서 성사동으로 편입된 713-1 |
| | 원당동 | 원당동 중 사리현동으로 편입된 1089, 1090, 1091, 1091-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를 제외한 전 지역 및 사리현동에서 원당동으로 편입된 1113-1, 1114-1, 1121-1, 1121-1, 1129-1, 1131-1, 1146-1 |
| | 신원동 | 신원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5, 4-2, 447-1, 산70-1를 제외한 전 지역 및 오금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2, A-3, 중로1-6, 중로2-31, 중로3-9, 중로, 2-38, 소로3-84, 하천2, 연결녹지12, 연결녹지13, 연결녹지48, 연결녹지49와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8, 소하천4, 연결녹지1, 연결녹지2 |
| | 원흥동 | 원흥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275-3, 276-2, 276-3, 276-6, 297, 297-3, 298-3, 298-5, 300, 301-4, 303, 305-4, 305-9, 306-1, 306-3, 306-4, 306-5, 306-6, 306-10, 306-11, 306-12, 306-13, 306-14, 306-15, 307, 308, 308-1, 308-2, 309, 309-2, 310, 310-1, 311, 311-1, 312, 312-1, 313-1, 313-2, 313-3, 313-4, 314, 314-1, 314-2, 315, 316-1, 316-3, 316-4,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7-11, 317-12, 317-13, 317-14, 317-15, 317-16, 317-17, 317-18, 317-19, 317-20, 317-21, 317-22, 318-2, 318-3, 319-15, 319-16, 321-1, 321-7, 321-12, 321-13, 321-14, 321-15, 321-16, 321-17, 322, 323, 324-1, 325-1, 326-1, 327-1, 328-1, 330-1, 330-3, 331-3, 331-8, 578-32, 578-33, 578-18, 578-19, 578-21, 582-2, 582-8, 산121, 산123-2를 제외한 전 지역 및 도내동에서 원흥동으로 편입된 708, 712, 730, 731, 732, 733, 737, 737-1, 737-2, 737-3, 737-4, 737-5, 737-6, 737-7, 737-8, 738, 739, 739-1, 739-2, 739-3, 739-4, 739-5, 740, 741, 741-1, 741-2, 741-3, 741-4, 741-5, 742, 743, 743-1, 743-2, 743-3, 744, 744-1, 744-2, 744-3, 744-4, 744-5, 745, 746, 746-1, 746-2, 746-3, 748, 749, 749-1, 749-2, 749-3, 749-4,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 | 도내동 | 도내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2, 1-3, 1-5, 2-3, 2-4, 2-5, 3, 4, 5, 5-2, 5-3, 5-4, 6, 7, 8-3, 9, 893-6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원흥동과 용두동에서 도내동으로 편입된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71, 976, 977, 980, 981, 983, 984, 985, 986, 987, 996, 1009, 1010, 1015, 1016, 1019, 1054, 1055, 1055-1, 1056, 1057, 1058, 1061-3, 1061-4, 1064, 1077, 1101, 1114, 1127, 1128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북한산동 | 북한산동 일원 |
| | 효자동 | 효자동 일원 |
| | 지축동 | 지축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717-15, 761-10, 761-8, 761-9, 767-11, 767-13, 768-6, 771-12, 771-13, 771-15, 771-16, 771-17, 771-18, 771-19, 771-2, 771-20, 771-21, 771-22, 771-23, 771-24, 771-26, 771-27, 771-3, 771-31, 771-32, 771-34, 771-35, 771-38, 771-39, 771-4, 771-42, 771-43, 771-44, 771-48, 773-2, 771-5, 771-50, 771-51, 772-1, 772-2, 772-3, 772-4, 772-5, 772-7, 773-1, 773-11, 773-4, 773-5, 773-6, 779-1, 779-2, 780, 780-1, 780-11, 780-14, 780-15, 780-16, 780-2, 780-3, 780-4, 780-6, 781-1, 781-2, 782, 783-1, 783-2, 783-3, 786-12, 786-13, 783-5, 783-6, 785-10, 785-2, 785-3, 785-4, 785-6, 785-7, 785-8, 785-9, 786-10, 786-11, 786-14, 786-15, 786-18, 786-28, 786-29, 786-37, 786-40, 786-41, 840, 840-2, 840-5, 840-6, 840-7, 840-8, 841-1, 841-2, 841-3, 841-8, 841-9, 843-3, 845-5 및 동산동으로 편입된 688-2, 688-3, 689-10, 689-12, 689-13, 689-14, 689-15, 689-16, 689-2, 689-3, 689-4, 689-5, 689-6, 689-7, 689-8, 689-9, 690-2, 710-2, 710-3, 711-2, 711-4, 712-11, 712-12, 712-13, 712-14, 712-15, 712-18, 712-2, 712-20, 712-21, 712-22, 712-23, 712-3, 712-4, 712-6, 712-7, 712-8, 712-9, 713-10, 713-11, 713-12, 713-13, 713-14, 713-15, 713-2, 713-5, 713-6, 713-7, 713-8, 713-9, 716-1, 716-10, 716-1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831-1을 제외한 전 지역 |
| | 오금동 | 오금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333-1, 333-2, 336-1, 337-1, 337-2, 338-1, 338-2, 339-1,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9, 372-3, 372-6, 372-7, 372-8, 372-11, 372-19, 372-9,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5, 376-4, 376-5, 377-2, 382-2, 383-2, 384-5, 384-6, 385-10, 385-9, 414-8, 431-10, 431-11, 431-14, 431-9, 438-7, 438-14, 438-15, 438-193, 438-196, 438-197, 438-198, 438-217, 438-220, 438-58, 438-59, 438-60, 438-61, 438-62, 438-63, 438-64, 438-66, 458-2, 465, 466-1, 467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신원동에서 오금동으로 편입된 중로 1-6, 주차장 5, 근린공원 8 |
| | 삼송동 | 삼송동 중 동산동으로 편입된 1-1, 2, 2-2, 3-1, 3-2, 3-3, 3-4, 3-5, 3-6, 3-8, 3-9, 3-10, 3-11, 3-12, 4-1, 4-2, 4-3, 4-4, 4-5, 4-6, 4-7, 5-1, 5-2, 5-4, 5-5, 5-6, 5-8, 5-10, 5-12, 5-13, 5-14, 15-5,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5,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47, 5-48, 6, 7, 7-2, 7-3, 7-4, 7-5, 7-6,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1,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삼송동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8, 7-40, 7-41, 7-42, 7-48, 7-49, 7-51, 7-56, 7-58, 7-59, 7-60,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4, 7-79, 7-80,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2, 7-95, 7-96, 7-97, 7-98, 7-99, 7-100, 7-103, 7-104, 7-108, 7-109,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 7-120, 7-122, 7-123, 7-124, 7-125, 7-126, 7-128, 7-129, 7-130, 7-131, 7-132, 7-133, 7-134, 7-135, 7-139, 7-141, 7-142, 8-1, 8-2, 8-3, 8-4, 8-5, 9-1, 9-2,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0-10, 10-12, 13-2, 14-2,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5-1, 15-2, 15-3, 15-4, 15-6, 145-1, 147-9, 148, 149-3, 150, 151, 152, 153-1, 153-2, 153-3, 153-5, 154-1, 154-2, 154-3, 154-4, 154-5,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6-1, 156-2, 157, 159-1, 159-2, 160-1, 160-2, 161, 162-1, 162-2, 162-3, 162-4, 162-5, 163, 164, 165-1, 165-2, 166, 166-1, 166-10, 166-1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 168-1, 168-2, 168-3,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70-1, 170-2, 170-3, 173-1, 171, 172, 173-2, 173-4, 173-5, 173-6, 174, 190-1, 190-10, 190-11, 190-13, 190-14, 190-15, 190-16, 190-17, 190-18, 190-19,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 191-1, 191-10, 191-11, 191-12, 191-13, 191-14,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 193, 193-1, 194,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6-1, 196-10, 196-11, 196-12, 196-13, 196-14, 196-15,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8-1, 198-10, 198-11, 198-12, 198-13, 198-14, 198-15, 198-16, 198-17, 198-18, 198-19, 198-2, 198-20, 198-21, 198-22, 198-23,198-24, 198-25, 198-26, 198-27, 198-28,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66-2, 266-3, 267, 270-1, 275, 280, 281, 282-1, 283, 284, 285-1, 286, 286-1, 287-1, 288, 288-1, 288-2와 삼송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08, 108-1, 108-2, 109-10, 109-11, 109-12, 109-13, 109-15, 109-2, 109-3, 109-4, 109-7, 110-1, 110-10,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삼송동 | 110-2, 111, 111-1, 112-1, 112-2, 112-4, 113-1, 113-2, 113-21, 113-22, 113-24, 113-4, 113-5, 113-6, 114-1, 114-2, 114-3, 114-6, 114-7, 116-1, 117-1, 221-1, 221-2, 221-4, 221-6, 248-1, 248-1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9-1, 249-2, 249-3, 249-4, 250-1, 250-2, 250-3, 250-4, 250-6, 250-7, 250-8, 251-1, 251-2, 251-3, 251-4, 251-5, 252, 252-1, 254-1, 254-10, 254-11, 254-12, 254-13,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5-1,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9, 255-2, 255-20, 255-21, 255-22, 255-23, 255-24, 255-25, 255-26, 255-27, 255-28, 255-29, 255-3, 255-30, 255-31, 255-4, 255-5, 255-6, 255-7, 255-8, 256-1, 256-10, 256-11, 256-12, 256-14, 256-15, 256-18,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9, 257-2, 257-3, 257-4, 257-5, 257-5, 258, 258-3, 259, 259-1, 268-40, 272, 272-1, 272-2, 273, 273-1, 273-2, 273-3, 273-4, 273-5, 274를 제외한 전 지역, 원흥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A-18, 완충녹지19,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24, 중로1-4, 중로2-37, 소하천1, 단독주택1, 공공용지15, 어린이공원2, 종교5, 하천1, 연결녹지37, 소로2-472, 소로1-170, 소로2-474, 소로2-475, 소로3-64, 중로2-15 및 지축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하천1, 상업8, 주차장2, 도4, 공영차고지, 철도시설3, 연결녹지46, 경관녹지46, 대로1-11, 광로3-1, 대로3-32, 중로2-16 |
| | 동산동 | 동산동 일원과 삼송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소하천3, 공공청사3, 근린공원2, 근린공원4, B-1, A-21, A-22, 초등, 교3, 도1, 도2, 도3, 종교8, 연결녹지39, 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연결, 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4, 연결녹지45, 연결녹지47, 대로1-9, 소로2-534, 중로2-9, 중로2-12, 소로1-177, 대로3-2, 중로2-10, 중로2-6, 중로2-11, 대로3-3, 소로1-183, 대로1-11, 완충녹지25, 완충녹지26, 지축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근린공원15, 근린공원16, 경관녹지47, 중로2-47, 중로2-19 및 용두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종교6, 전기공급1, 환경자원시설1, 근린공원2, 경관녹지44, 소로3-489, 소로2-534, 공원3 |
| | 용두동 | 용두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641-25, 641-26, 641-30, 641-31, 641-32, 641-33, 641-49, 661-2, 661-5, 662-2, 662-3, 662-4, 662-5, 662-6, 662-7, 662-8, 662-9, 662-10, 662-11, 662-12, 664-2, 664-5, 664-6, 664-7, 664-8, 665, 665-1, 665-2, 665-3, 665-4, 666, 667, 668, 669-1, 669-3, 670-2, 672-2, 672-4를 제외한 전 지역 |
| | 고양동 | 고양동 일원, 벽제동에서 고양동으로 편입된 778부터 1131까지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벽제동 | 벽제동 중 고양동으로 편입된 287-2, 288-1, 289-1, 297-34, 307-1・3・4・5・6, 308-1～5, 310-2, 312-4, 317-1・8・10・11・12, 322-1・4・5・6, 323-1～5, 324, 324-1, 325-1～7, 326, 326-1, 327-1～10, 327-12～15, 337, 338, 338-1～6, 339, 339-3・4, 340-1～3, 340-5～10, 341-1・2, 341-5～12, 341-14, 341-17～21, 341-23～25, 341-28・32・33・35・37・43・45・47, 342-1, 342-3～14, 343, 343-5・11・12, 344, 344-1・4・8, 345, 345-1, 346-2・3, 346-5～17, 346-20, 346-23～27, 346-29・30, 346-32～35, 346-37・38, 346-41～44, 346-47・48, 346-50～56, 346-58～60, 346-62～66, 346-69・72, 346-74～81, 346-85～87, 347-1～4, 348-1～4, 349, 349-1・3・4, 350-2・4・5・6・7・10・11・12, 351-1～3, 351-8・9・27, 352-1・10, 353-2・4・5・7, 354, 354-3, 355-5・7, 356-5・21, 358-3・4・7・16, 360-1～5, 360-10・12・14・15・17・24・26, 424, 424-1～4, 424-7, 424-9～11, 425-1～5, 425-9～12, 425-16・17・18・21・23・25・26・29・36・37・42, 427, 427-3～23, 428-1・3・5・7・9, 428-13～24, 429, 429-2～7, 429-9, 429-15～18, 431-2・3・6, 679-21・25・31・72, 688-1, 695, 695-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을 제외한 전 지역 |
| | 선유동 | 선유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416-1～10, 417, 418, 419-1～6, 420-1～5, 421, 422-1～5, 423-1・2, 424, 425-1・2, 426, 427, 427-1, 430, 430-1, 431-1・4, 432-2, 433-1・2・3, 434-2・3, 436, 437-1・4・6, 438-1・4・5・6, 439-1・2, 440-1・2, 441, 442, 443-1～9, 444-1・2, 445-1～5, 446, 447-1～6, 448-1～17, 449, 449-1・2, 450-1・2, 451-1～4, 452-1・2, 453, 454, 454-1, 455, 456, 456-1, 520-1・2・6, 534를 제외한 전 지역 |
| | 대자동 | 대자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225-8, 1187-11～12를 제외한 전 지역 |
| | 관산동 | 관산동 일원과 사리현동에서 관산동으로 편입된 1013 |
| | 내유동 | 내유동 중 지영동으로 편입된 841-1, 842, 843, 844, 845, 846, 847-1・2, 848-1・2, 849, 850-1・2, 851-1～3, 852-1・2, 853-1～3, 854-1～4, 855-1, 856-1・2, 857-1～5, 858-1～4, 859-1・2, 860-1～25, 861, 862, 862-1, 863-1～21, 863-23～40, 864, 865-1・2, 866-2・3, 867-2～6, 868-1～10, 868-12～16, 869-3・4, 870-2・3, 871-1, 872-1, 873-1～19, 874-1, 875-1,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1・2, 886-1, 887-1～5, 887-8・9, 888-1・3, 889-1～5, 889-7・9・11・13, 889-15～20, 890-1・2, 981-1・2・4・5, 892-1～4, 892-6, 893-1～8, 893-10, 893-12～14,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내유동 | 894-1~4, 895, 896-1·3·4, 897-1·2, 898-1·2, 931-2, 933-2, 934-2, 935, 936-1·2, 937-1~3, 938-1~4, 939-1·2, 940-1, 941-1~3, 941-8, 942, 943, 944, 945-1·2, 946-1·2, 947-1·2, 948-1~4, 949, 949-1·4·6·7, 950-1·2, 951-1~3, 952, 952-1~3, 954, 955, 956-2, 957-2, 962-2, 963-2·3·5, 964, 966-5·6, 966-2-~24, 1012, 1013, 1014, 1017, 1017-1~53, 1021, 1021-1011, 1023을 제외한 전 지역 |
| | 내곡동 | 내곡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3-7, 504-8을 제외한 전 지역 |
| | 대장동 | 대장동 중 화정동으로 편입된 1-1·3·4, 2-2·7·12, 3-2, 3-12~14, 3-19·20, 4-2·6, 5-1·2, 6-7~9, 539-9, 542-3을 제외한 전 지역 |
| | 신평동 | 신평동 일원 |
| | 토당동 | 토당동 일원,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913 |
| | 화정동 | 토당동에서 편입된 화정동 25, 25-1, 26, 26-1~8, 27-1·2, 28, 29-1·5, 33-3, 33-6·7, 474, 503-1, 503-3~20, 503-22, 504-3, 510-1, 510-5, 514-4~8, 514-13~24, 514-25~51, 514-53, 514-55·56, 514-58, 514-60~69, 514-71, 514-74~79, 514-81, 514-92, 514-97, 514-100·101, 514-103, 514-105~108, 514-111~117, 산80-3, 산81-1, 산82, 산83-4~10, 산86, 산87-5, 산176, 산176-1·2, 산178, 산179, 산179-1~5, 산180, 산180-3~8, 산190-6·7, 산193-1, 산193-3·4, 산193-9, 산194-12, 산194-14~16을 제외한 전 지역 |
| | 행주내동 | 행주내동 일원과 행주외동에서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724, 724-1, 725, 725-1~3, 726, 726-1~2, 727, 727-1, 728, 729, 730, 730-1~5, 731, 731-1~5, 732, 732-1~11, 733, 733-1~5, 734-6~7, 735, 735-1~10, 736, 736-1~2, 737-3~8, 738, 739, 740, 740-1~8, 741, 741-1~8, 742, 742-1~5, 743, 743-1~13, 744, 744-1~7, 745, 745-1~7, 746, 746-1~4, 747, 747-1, 748, 748-1 |
| | 행주외동 | 행주외동 일원 중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1-1~2, 2-1~4, 3-1~3, 4-1~2, 5, 6, 32-1~2, 32-4~6, 32-12, 33-5~7, 33-10~12, 34, 34-2~10, 32-12, 34-14, 35-1~6, 36-1~2, 37-1~5, 37-7, 37-10~14, 38, 38-1~2, 39-1~6, 40, 41, 42-1~9, 43-1~9, 44-1~6, 45-1~2, 45-4~15, 46-1~8, 47-1~8, 48-1~5, 49-1, 49-5, 282-1, 282-4를 제외한 전 지역 |
| | 행신동 |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664-4를 제외한 전 지역 |
| | 강매동 | 강매동 일원 |
| | 향동동 | 향동동 일원 |
| | 화전동 | 화전동 일원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덕양구 | 덕은동 | 덕은동 일원 |
| | 현천동 | 현천동 일원 |
| 일산동구 | 식사동 | 식사동 일원, 식사동 중 풍동으로 편입된 878-2, 878-24를 제외한 전 지역 |
| | 중산동 |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679, 1679-1, 1738, 1741, 1769, 1770을 제외한 전 지역 |
| | 정발산동 | 정발산동 일원, 장항동에서 정발산동으로 편입된 1603-1, 1603-2, 1603-3, 1603-4 |
| | 풍동 | 풍동 일원, 식사동에서 풍동으로 편입된 195-35~36 |
| | 산황동 | 산황동 일원과 주교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307-1·2·3·4·5·6 및 내곡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806-33·34 |
| | 백석동 | 백석동 중 내곡동으로 편입된 2-1~52, 22-1~15를 제외한 전 지역과 내곡동에서 백석동으로 편입된 929-1~12, 929-14~26, 1128-9~10, 1132-1~9, 1132-13 |
| | 마두동 | 마두동 일원 |
| | 장항동 | 장항동 일원과 대화동에서 편입된 장항동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일산동구 | 사리현동 | 사리현동 중 관산동으로 편입된 34-3을 제외한 전 지역 |
| | 지영동 | 지영동 일원과 내유동에서 지영동으로 편입된 779, 780, 780-1, 781, 781-1, 782~833, 833-1, 834~864, 864-1, 865~920, 920-1·2, 921~1002, 1002-1, 1003~1020, 1020-1~17, 1021~1035, 1035-1, 1036, 1037, 1037-1, 1038~1069, 1069-1, 1070~1087, 1087-1, 1088~1103 |
| | 문봉동 | 문봉동 일원 |
| | 설문동 | 설문동 일원 |
| | 성석동 | 성석동 일원 |
| 일산서구 | 일산동 | 일산동 일원,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 | 탄현동 | 탄현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7-30・40・43・45・47・49・52・53・54・56・57・58・59・62・63・64・65・66・69・71・72・73・75・76・79・83・84・85・87・89・90, 17-94~98, 18-3・4・7・13・14・16・27, 19-3・4・5・7・8, 19-11~21, 19-27~34, 19-36~40, 19-42・45・46・47, 19-51~65, 20-1~9, 20-11・13・14・15・17・22, 21-1・2・5・6・7, 22, 22-2・5・6・7, 23-2・4・7・8・9・11・12・13・24・25・26・27・29, 23-31~37, 23-39・41・42・43・45・47・48・49・53・55・56・58, 23-62~70, 23-73・75・77・78・80・81・82・83, 23-86~94, 23-96~100, 23-102・103, 23-105~108, 23-119・123・124・125・126・136・137・139・140・142・145・147・148・150・154・157・158, 23-165~180, 23-183~191, 25-1, 26-1・2・5・6・7・10・11・12・13・15・17・18, 27-16・17・18・23, 28, 28-1・2・3・5・6・7・8・9・11・14・15・16・17, 29-1・2・4・6・7・8・9, 29-11~26, 30-7・15・16・18・20・21・22, 30-23, 30-25~33, 30-36・37・38・40・41・42・46・47・55, 31-17, 32-1, 33-1・2・5・8・11・12・14・15・17・18・20・21・22・26・29・32・36・38・39・40・41・43・44・46・47・48・58・63・65・66・67・68・69・72・73, 34, 34-4・6・11・17・19・20・21・22・26, 36-1~7, 36-9~36, 36-41・42・46・48・54・56・70, 37-2・3・8・22・23・25・26, 37-31~35, 39-2・3, 176-4, 182-3, 184-12, 185-5, 196-1, 197, 197-2, 198, 198-3・6・9・10・14・17, 198-21~28, 198-30, 199-37・53・55・57・59・79・80・92・93・97・98, 1416, 1441-13・14, 1445, 1445-2, 1446, 1469, 1633, 산32-3를 제외한 전 지역 |
| | 주엽동 | 주엽동 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39, 140, 181-3을 제외한 전 지역 |

| 구 명 | 동 명 | 관할 구역 |
|---|---|---|
| 일산서구 | 대화동 | 대화동에서 장항동으로 편입된 1063, 1064, 1065-1·2·3·4, 1066-1·3·4·5, 1066-6·7·8·9·10·11·12·13·14·15, 1067, 1067-1·3·4·5·6·7, 1068, 1068-1·2, 1069, 1069-1·2, 1070-1·2, 1071, 1073, 1073-1·2, 1075, 1100-1·2, 1101-1·2·3, 1105-3, 1107-1·2, 1112, 1112-2·3·4, 1116, 1116-1, 1120, 1121-1·2·3, 1122-1, 1123, 1129-1·2·7·8·9, 1143-1·3·4, 1145, 1145-1·2·3·4·5·6·7·8·9·10, 1151-1·3·4·5·6·7·8, 1152-1·2·4·5·6·7, 1154-1, 1155-1·2·3·5·6·7·8·9, 1160-1·2·3·4·5·6·7, 1161, 1161-1, 1164, 1165, 1165-2, 1165-3, 1165-4·5·6, 1166, 1166-1·2, 1167-1·3·4·5·7·8, 1168-1·2·3·4·5, 1169, 1169-1·2·3, 1181-1·2·3·4·6, 1182, 1182-1·2·3·4, 1183-1·2·3·4, 1189-1·2·3, 1190-2, 1206-4, 1208, 1208-4, 1309-66·68·105·118·119·120·121, 1310-5·6, 1319-1·2·3, 1321-10·12, 1322-2, 1323-4, 1362-2, 1363-2·4·6, 1396-230·231·232·234·235·241·242·243·244·245·262·291·296·377·378·380, 1943-29, 1949-6·7·17·18·20·36, 1951, 1951-1·2·3·4·5·6·7·8·10·11·12·13·14·15·16·17·18·27, 1953, 1953-1·2·3·4·7·10·11·12·13을 제외한 전 지역 |
| | 법곳동 | 법곳동 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67-2, 168-1, 169-2~3, 171-1, 283-1, 284-1, 287-1, 288-1, 289-1, 290-1~8, 291-1~6, 292-1~5, 293-1, 294-1, 294-3~7, 295, 296-1, 727, 727-1, 727-2를 제외한 전 지역 |
| | 구산동 | 구산동 일원 |
| | 가좌동 | 가좌동 일원 |
| | 덕이동 | 덕이동 일원 |

# 중요사항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 설>

</td><td>

**고양시 구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양시 구와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고양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고양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명</th><th>관할구역(법정동)</th></tr>
<tr><td>덕양구</td><td>주교동, 성사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북한산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토당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행신동, 강매동, 향동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32개 동)</td></tr>
<tr><td>일산동구</td><td>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동, 산황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13개 동)</td></tr>
<tr><td>일산서구</td><td>일산동,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법곳동,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8개 동)</td></tr>
</table>

</td></tr>
</table>

## 현 행

[별표]

### 고양시동명칭 및 관할구역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덕양구 | 주교동 | 주교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1348-3·4·5·6·7·9를 제외한 전지역 |
| | | 성사동 | 성사동 일원, 주교동에서 성사동으로 편입된 713-1 |
| | | 원당동 | 원당동중 사리현동으로 편입된 1089, 1090, 1091, 1091-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를 제외한 전지역과 사리현동에서 원당동으로 편입된 1113-1, 1114-1, 1121-1, 1121-1, 1129-1, 1131-1, 1146-1를 포함한다 |
| | | 신원동 | 신원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5, 4-2, 447-1, 산70-1를 제외한 전지역과 오금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2, A-3, 중로1-6, 중로2-31, 중로3-9, 중로, 2-38, 소로3-84, 하천2, 연결녹지12, 연결녹지13, 연결녹지48, 연결녹지49와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8, 소하천4, 연결녹지1, 연결녹지2를 포함한다. |
| | | 원흥동 | 원흥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275-3, 276-2, 276-3, 276-6, 297, 297-3, 298-3, 298-5, 300, 301-4, 303, 305-4, 305-9, 306-1, 306-3, 306-4, 306-5, 306-6, 306-10, 306-11, 306-12, 306-13, 306-14, 306-15, 307, 308, 308-1, 308-2, 309, 309-2, 310, 310-1, 311, 311-1, 312, 312-1, 313-1, 313-2, 313-3, 313-4, 314, 314-1, 314-2, 315, 316-1, 316-3, 316-4,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7-11, 317-12, 317-13, 317-14, 317-15, 317-16, 317-17, 317-18, 317-19, 317-20, 317-21, 317-22, 318-2, 318-3, 319-15, 319-16, 321-1, 321-7, 321-12, 321-13, 321-14, 321-15, 321-16, 321-17, 322, 323, 324-1, 325-1, 326-1, 327-1, 328-1, 330-1, |

## 개 정 안

[별표 2]

### 고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제2항 관련)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덕양구 | 주교동 | 주교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1348-3·4·5·6·7·9를 제외한 전 지역 |
| | 성사동 | 성사동 일원, 주교동에서 성사동으로 편입된 713-1 |
| | 원당동 | 원당동 중 사리현동으로 편입된 1089, 1090, 1091, 1091-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를 제외한 전 지역 및 사리현동에서 원당동으로 편입된 1113-1, 1114-1, 1121-1, 1121-1, 1129-1, 1131-1, 1146-1 |
| | 신원동 | 신원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5, 4-2, 447-1, 산70-1를 제외한 전 지역 및 오금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2, A-3, 중로1-6, 중로2-31, 중로3-9, 중로, 2-38, 소로3-84, 하천2, 연결녹지12, 연결녹지13, 연결녹지48, 연결녹지49와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편입된 A-8, 소하천4, 연결녹지1, 연결녹지2 |
| | 원흥동 | 원흥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275-3, 276-2, 276-3, 276-6, 297, 297-3, 298-3, 298-5, 300, 301-4, 303, 305-4, 305-9, 306-1, 306-3, 306-4, 306-5, 306-6, 306-10, 306-11, 306-12, 306-13, 306-14, 306-15, 307, 308, 308-1, 308-2, 309, 309-2, 310, 310-1, 311, 311-1, 312, 312-1, 313-1, 313-2, 313-3, 313-4, 314, 314-1, 314-2, 315, 316-1, 316-3, 316-4,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7-10, 317-11, 317-12, 317-13, 317-14, 317-15, 317-16, 317-17, 317-18, 317-19, 317-20, 317-21, 317-22, 318-2, 318-3, 319-15, 319-16, 321-1, 321-7, 321-12, 321-13, 321-14, 321-15, 321-16, 321-17, 322, 323, 324-1, 325-1, 326-1, 327-1, 328-1, 330-1, 330-3, 331-3, 331-8, 578-32, 578-33, 578-18, 578-19, 578-21, 582-2, 582-8, 산121, 산123-2를 제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 330-3, 331-3, 331-8, 578-32, 578-33, 578-18, 578-19, 578-21, 582-2, 582-8, 산121, 산123-2를 제외한 전 지역과 도내동에서 원흥동으로 편입된 708, 712, 730, 731, 732, 733, 737, 737-1, 737-2, 737-3, 737-4, 737-5, 737-6, 737-7, 737-8, 738, 739, 739-1, 739-2, 739-3, 739-4, 739-5, 740, 741, 741-1, 741-2, 741-3, 741-4, 741-5, 742, 743, 743-1, 743-2, 743-3, 744, 744-1, 744-2, 744-3, 744-4, 744-5, 745, 746, 746-1, 746-2, 746-3, 748, 749, 749-1, 749-2, 749-3, 749-4,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 | 덕양구 | 도내동 | 도내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2, 1-3, 1-5, 2-3, 2-4, 2-5, 3, 4, 5, 5-2, 5-3, 5-4, 6, 7, 8-3, 9, 893-6을 제외한 전 지역과 원흥동과 용두동에서 도내동으로 편입된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71, 976, 977, 980, 981, 983, 984, 985, 986, 987, 996, 1009, 1010, 1015, 1016, 1019, 1054, 1055, 1055-1, 1056, 1057, 1058, 1061-3, 1061-4, 1064, 1077, 1101, 1114, 1127, 1128 |
| | **<신 설>** | 북한동 | 북한동 일원 |
| | | 효자동 | 효자동 일원 |
| | | 지축동 | 지축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717-15, 761-10, 761-8, 761-9, 767-11, 767-13, 768-6, 771-12, 771-13, 771-15, 771-16, 771-17, 771-18, 771-19, 771-2, 771-20, 771-21, 771-22, 771-23, 771-24, 771-26, 771-27, 771-3, 771-31, 771-32, 771-34, 771-35, 771-38, 771-39, 771-4, 771-42, 771-43, 771-44, 771-48, 773-2, 771-5, 771-50, 771-51, 772-1, 772-2, 772-3, 772-4, 772-5, 772-7, 773-1, 773-11, 773-4, 773-5, 773-6, 779-1, 779-2, 780, 780-1, 780-11, 780-14, 780-15, 780-16, 780-2, 780-3, 780-4, 780-6, 781-1, 781-2, 782, 783-1, 783-2, 783-3, 786-12, 786-13, 783-5, 783-6, 785-10, 785-2, 785-3, 785-4, 785-6, 785-7, 785-8, 785-9, 786-10, 786-11, 786-14, 786-15, 786-18, 786-28, 786-29, 786-37, 786-40, 786-41, 840, 840-2,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외한 전 지역 및 도내동에서 원흥동으로 편입된 708, 712, 730, 731, 732, 733, 737, 737-1, 737-2, 737-3, 737-4, 737-5, 737-6, 737-7, 737-8, 738, 739, 739-1, 739-2, 739-3, 739-4, 739-5, 740, 741, 741-1, 741-2, 741-3, 741-4, 741-5, 742, 743, 743-1, 743-2, 743-3, 744, 744-1, 744-2, 744-3, 744-4, 744-5, 745, 746, 746-1, 746-2, 746-3, 748, 749, 749-1, 749-2, 749-3, 749-4,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 **<삭 제>** | 도내동 | 도내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2, 1-3, 1-5, 2-3, 2-4, 2-5, 3, 4, 5, 5-2, 5-3, 5-4, 6, 7, 8-3, 9, 893-6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원흥동과 용두동에서 도내동으로 편입된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71, 976, 977, 980, 981, 983, 984, 985, 986, 987, 996, 1009, 1010, 1015, 1016, 1019, 1054, 1055, 1055-1, 1056, 1057, 1058, 1061-3, 1061-4, 1064, 1077, 1101, 1114, 1127, 1128 |
| 덕양구 | 북한산동 | 북한산동 일원 |
| | 효자동 | 효자동 일원 |
| | 지축동 | 지축동 중 삼송동으로 편입된 717-15, 761-10, 761-8, 761-9, 767-11, 767-13, 768-6, 771-12, 771-13, 771-15, 771-16, 771-17, 771-18, 771-19, 771-2, 771-20, 771-21, 771-22, 771-23, 771-24, 771-26, 771-27, 771-3, 771-31, 771-32, 771-34, 771-35, 771-38, 771-39, 771-4, 771-42, 771-43, 771-44, 771-48, 773-2, 771-5, 771-50, 771-51, 772-1, 772-2, 772-3, 772-4, 772-5, 772-7, 773-1, 773-11, 773-4, 773-5, 773-6, 779-1, 779-2, 780, 780-1, 780-11, 780-14, 780-15, 780-16, 780-2, 780-3, 780-4, 780-6, 781-1, 781-2, 782, 783-1, 783-2, 783-3, 786-12, 786-13, 783-5, 783-6, 785-10, 785-2, 785-3, 785-4, 785-6, 785-7, 785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840-5, 840-6, 840-7, 840-8, 841-1, 841-2, 841-3, 841-8, 841-9, 843-3, 845-5과 동산동으로 편입된 688-2, 688-3, 689-10, 689-12, 689-13, 689-14, 689-15, 689-16, 689-2, 689-3, 689-4, 689-5, 689-6, 689-7, 689-8, 689-9, 690-2, 710-2, 710-3, 711-2, 711-4, 712-11, 712-12, 712-13, 712-14, 712-15, 712-18, 712-2, 712-20, 712-21, 712-22, 712-23, 712-3, 712-4, 712-6, 712-7, 712-8, 712-9, 713-10, 713-11, 713-12, 713-13, 713-14, 713-15, 713-2, 713-5, 713-6, 713-7, 713-8, 713-9, 716-1, 716-10, 716-1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831-1을 제외한 전지역 | | | -8, 785-9, 786-10, 786-11, 786-14, 786-15, 786-18, 786-28, 786-29, 786-37, 786-40, 786-41, 840, 840-2, 840-5, 840-6, 840-7, 840-8, 841-1, 841-2, 841-3, 841-8, 841-9, 843-3, 845-5 및 동산동으로 편입된 688-2, 688-3, 689-10, 689-12, 689-13, 689-14, 689-15, 689-16, 689-2, 689-3, 689-4, 689-5, 689-6, 689-7, 689-8, 689-9, 690-2, 710-2, 710-3, 711-2, 711-4, 712-11, 712-12, 712-13, 712-14, 712-15, 712-18, 712-2, 712-20, 712-21, 712-22, 712-23, 712-3, 712-4, 712-6, 712-7, 712-8, 712-9, 713-10, 713-11, 713-12, 713-13, 713-14, 713-15, 713-2, 713-5, 713-6, 713-7, 713-8, 713-9, 716-1, 716-10, 716-11, 716-2, 716-3, 716-4, 716-5, 716-6, 716-7, 831-1을 제외한 전 지역 |
| | 덕양구 | 오금동 | 오금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333-1, 333-2, 336-1, 337-1, 337-2, 338-1, 338-2, 339-1,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9, 372-3, 372-6, 372-7, 372-8, 372-11, 372-19, 372-9,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5, 376-4, 376-5, 377-2, 382-2, 383-2, 384-5, 384-6, 385-10, 385-9, 414-8, 431-10, 431-11, 431-14, 431-9, 438-7, 438-14, 438-15, 438-193, 438-196, 438-197, 438-198, 438-217, 438-220, 438-58, 438-59, 438-60, 438-61, 438-62, 438-63, 438-64, 438-66, 458-2, 465, 466-1, 467을 제외한 전 지역과 신원동에서 오금동으로 편입된 중로1-6, 주차장5, 근린공원8을 포함한다. | <삭 제> | 오금동 | 오금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333-1, 333-2, 336-1, 337-1, 337-2, 338-1, 338-2, 339-1,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9, 372-3, 372-6, 372-7, 372-8, 372-11, 372-19, 372-9, 373-1, 373-2, 373-3, 374-1, 374-2, 374-3, 375, 376-4, 376-5, 377-2, 382-2, 383-2, 384-5, 384-6, 385-10, 385-9, 414-8, 431-10, 431-11, 431-14, 431-9, 438-7, 438-14, 438-15, 438-193, 438-196, 438-197, 438-198, 438-217, 438-220, 438-58, 438-59, 438-60, 438-61, 438-62, 438-63, 438-64, 438-66, 458-2, 465, 466-1, 467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신원동에서 오금동으로 편입된 중로1-6, 주차장5, 근린공원8 |
| | | 삼송동 | 삼송동 중 동산동으로 편입된 1-1, 2, 2-2, 3-1, 3-2, 3-3, 3-4, 3-5, 3-6, 3-8, 3-9, 3-10, 3-11, 3-12, 4-1, 4-2, 4-3, 4-4, 4-5, 4-6, 4-7, 5-1, 5-2, 5-4, 5-5, 5-6, 5-8, 5-10, 5-12, 5-13, 5-14, 15-5,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5,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47, 5-48, 6, 7, 7-2, 7-3, 7-4, 7-5, 7-6, 7-9, 7-10, 7-11, 7-12, 7-13, 7-14, | | 삼송동 | 삼송동 중 동산동으로 편입된 1-1, 2, 2-2, 3-1, 3-2, 3-3, 3-4, 3-5, 3-6, 3-8, 3-9, 3-10, 3-11, 3-12, 4-1, 4-2, 4-3, 4-4, 4-5, 4-6, 4-7, 5-1, 5-2, 5-4, 5-5, 5-6, 5-8, 5-10, 5-12, 5-13, 5-14, 15-5,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5,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47, 5-48, 6, 7, 7-2, 7-3,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신 설> | <신 설> | 7-15, 7-16, 7-17, 7-18, 7-19,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8, 7-40, 7-41, 7-42, 7-48, 7-49, 7-51, 7-56, 7-58, 7-59, 7-60,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4, 7-79, 7-80,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2, 7-95, 7-96, 7-97, 7-98, 7-99, 7-100, 7-103, 7-104, 7-108, 7-109,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 7-120, 7-122, 7-123, 7-124, 7-125, 7-126, 7-128, 7-129, 7-130, 7-131, 7-132, 7-133, 7-134, 7-135, 7-139, 7-141, 7-142, 8-1, 8-2, 8-3, 8-4, 8-5, 9-1, 9-2,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0-10, 10-12, 13-2, 14-2,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5-1, 15-2, 15-3, 15-4, 15-6, 145-1, 147-9, 148, 149-3, 150, 151, 152, 153-1, 153-2, 153-3 , 153-5, 154-1, 154-2, 154-3, 154-4, 154-5,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6-1, 156-2, 157, 159-1, 159-2, 160-1, 160-2, 161, 162-1, 162-2, 162-3, 162-4, 162-5, 163, 164, 165-1, 165-2, 166, 166-1, 166-10, 166-1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 168-1, 168-2, 168-3,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70-1, 170-2, 170-3, 173-1, 171, 172, 173-2, 173-4, 173-5, 173-6, 174, 190-1, 190-10, 190-11, 190-13, 190-14, 190-15, 190-16, 190-17, 190-18, 190-19,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 191-1, 191-10, 191-11, 191-12, 191-13, 191-14,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덕양구 | 삼송동 | 7-4, 7-5, 7-6,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8, 7-40, 7-41, 7-42, 7-48, 7-49, 7-51, 7-56, 7-58, 7-59, 7-60,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4, 7-79, 7-80,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2, 7-95, 7-96, 7-97, 7-98, 7-99, 7-100, 7-103, 7-104, 7-108, 7-109,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 7-120,<br>7-122, 7-123, 7-124, 7-125, 7-126, 7-128, 7-129, 7-130,<br>7-131, 7-132, 7-133, 7-134, 7-135, 7-139, 7-141, 7-142,<br>8-1, 8-2, 8-3, 8-4, 8-5, 9-1, 9-2,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0-10, 10-12, 13-2, 14-2, 14-4,<br>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20, 14-21, 14-22,<br>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14-30,<br>14-31, 14-32, 15-1, 15-2, 15-3, 15-4, 15-6, 145-1, 147-9,<br>148, 149-3, 150, 151, 152, 153-1, 153-2, 153-3 , 153-5, 154-1, 154-2, 154-3, 154-4, 154-5, 155-1, 155-2, 155-3, 155-4,<br>155-5, 155-6, 156-1, 156-2, 157, 159-1, 159-2, 160-1, 160-2,<br>161, 162-1, 162-2, 162-3, 162-4, 162-5, 163, 164, 165-1,<br>165-2, 166, 166-1, 166-10, 166-11, 166-2, 166-3, 166-4,<br>166-5, 166-6, 166-7, 166-8, 166-9, 167, 168-1, 168-2, 168-3,<br>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70-1, 170-2, 170-3, 173-1, 171, 172, 173-2, 173-4, 173-5, 173-6, 174,<br>190-1, 190-10, 190-11, 190-13, 190-14, 190-15, 190-16, 190-17, 190-18, 190-19,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 191-1, 191-10, 191-11, 191-12, 191-13, 191-14,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신 설>** | **<신 설>** | 192, 193, 193-1, 194,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6-1, 196-10, 196-11, 196-12, 196-13, 196-14, 196-15,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8-1, 198-10, 198-11, 198-12, 198-13, 198-14, 198-15, 198-16, 198-17, 198-18, 198-19, 198-2, 198-20, 198-21, 198-22, 198-23,198-24, 198-25, 198-26, 198-27, 198-28,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66-2, 266-3, 267, 270-1, 275, 280, 281, 282-1, 283, 284, 285-1, 286, 286-1, 287-1, 288, 288-1, 288-2과 삼송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08, 108-1, 108-2, 109-10, 109-11, 109-12, 109-13, 109-15, 109-2, 109-3, 109-4, 109-7, 110-1, 110-10, 110-2, 111, 111-1, 112-1, 112-2, 112-4, 113-1, 113-2, 113-21, 113-22, 113-24, 113-4, 113-5, 113-6, 114-1, 114-2, 114-3, 114-6, 114-7, 116-1, 117-1, 221-1, 221-2, 221-4, 221-6, 248-1, 248-1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9-1, 249-2, 249-3, 249-4, 250-1, 250-2, 250-3, 250-4, 250-6, 250-7, 250-8, 251-1, 251-2, 251-3, 251-4, 251-5, 252, 252-1, 254-1, 254-10, 254-11, 254-12, 254-13,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5-1,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9, 255-2, 255-20, 255-21, 255-22, 255-23, 255-24, 255-25, 255-26, 255-27, 255-28, 255-29, 255-3, 255-30, 255-31, 255-4, 255-5, 255-6, 255-7, 255-8, 256-1, 256-10, 256-11, 256-12, 256-14, 256-15, 256-18,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9, 257-2, 257-3, 257-4, 257-5, 257-5, 258, 258-3, 259, 259-1, 268-40, 272, 272-1, 272-2, 273, 273-1, 273-2, 273-3, 273-4, 273-5, 274를 제외한 전 지역과 원흥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A-18, 완충녹지19,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24, 중로1-4, 중로2-37, 소하천1, 단독주택1, 공공용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덕양구 | 삼송동 | 191-9, 192, 193, 193-1, 194,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6-1, 196-10, 196-11, 196-12, 196-13, 196-14, 196-15,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8-1, 198-10, 198-11, 198-12, 198-13, 198-14, 198-15, 198-16, 198-17, 198-18, 198-19, 198-2, 198-20, 198-21, 198-22, 198-23,198-24, 198-25, 198-26, 198-27, 198-28,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66-2, 266-3, 267, 270-1, 275, 280, 281, 282-1, 283, 284, 285-1, 286, 286-1, 287-1, 288, 288-1, 288-2와 삼송동 중 원흥동으로 편입된 108, 108-1, 108-2, 109-10, 109-11, 109-12, 109-13, 109-15, 109-2, 109-3, 109-4, 109-7, 110-1, 110-10, 110-2, 111, 111-1, 112-1, 112-2, 112-4, 113-1, 113-2, 113-21, 113-22, 113-24, 113-4, 113-5, 113-6, 114-1, 114-2, 114-3, 114-6, 114-7, 116-1, 117-1, 221-1, 221-2, 221-4, 221-6, 248-1, 248-1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9-1, 249-2, 249-3, 249-4, 250-1, 250-2, 250-3, 250-4, 250-6, 250-7, 250-8, 251-1, 251-2, 251-3, 251-4, 251-5, 252, 252-1, 254-1, 254-10, 254-11, 254-12, 254-13,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5-1, 255-10, 255-11, 255-12, 255-13, 255-14, 255-15, 255-16, 255-19, 255-2, 255-20, 255-21, 255-22, 255-23, 255-24, 255-25, 255-26, 255-27, 255-28, 255-29, 255-3, 255-30, 255-31, 255-4, 255-5, 255-6, 255-7, 255-8, 256-1, 256-10, 256-11, 256-12, 256-14, 256-15, 256-18,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9, 257-2, 257-3, 257-4, 257-5, 257-5, 258, 258-3, 259, 259-1, 268-40, 272, 272-1, 272-2, 273, 273-1,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지15, 어린이공원2, 종교5, 하천1, 연결녹지37, 소로2-472, 소로1-170, 소로2-474, 소로2-475, 소로3-64, 중로2-15와 지축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하천1, 상업8, 주차장2, 도4, 공영차고지, 철도시설3, 연결녹지46, 경관녹지46, 대로1-11, 광로3-1, 대로3-32, 중로2-16을 포함한다. | | | 273-2, 273-3, 273-4, 273-5, 274를 제외한 전 지역, 원흥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A-18, 완충녹지19, 광로3-1, 근린공원1, 근린공원24, 중로1-4, 중로2-37, 소하천1, 단독주택1, 공공용지15, 어린이공원2, 종교5, 하천1, 연결녹지37, 소로2-472, 소로1-170, 소로2-474, 소로2-475, 소로3-64, 중로2-15 및 지축동에서 삼송동으로 편입된 하천1, 상업8, 주차장2, 도4, 공영차고지, 철도시설3, 연결녹지46, 경관녹지46, 대로1-11, 광로3-1, 대로3-32, 중로2-16 |
| | 덕양구 | 동산동 | 동산동 일원과 삼송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소하천3, 공공청사3, 근린공원2, 근린공원4, B-1, A-21, A-22, 초등, 교3, 도1, 도2, 도3, 종교8, 연결녹지39, 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연결, 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4, 연결녹지45, 연결녹지47, 대로1-9, 소로2-534, 중로2-9, 중로2-12, 소로1-177, 대로3-2, 중로2-10, 중로2-6, 중로2-11, 대로3-3, 소로1-183, 대로1-11, 완충녹지25, 완충녹지26과 지축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근린공원15, 근린공원16, 경관녹지47, 중로2-47, 중로2-19과 용두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종교6, 전기공급1, 환경자원시설1, 근린공원2, 경관녹지44, 소로3-489, 소로2-534, 공원3을 포함한다. | <삭 제> | 동산동 | 동산동 일원과 삼송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소하천3, 공공청사3, 근린공원2, 근린공원4, B-1, A-21, A-22, 초등, 교3, 도1, 도2, 도3, 종교8, 연결녹지39, 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연결, 지42, 연결녹지43, 연결녹지44, 연결녹지45, 연결녹지47, 대로1-9, 소로2-534, 중로2-9, 중로2-12, 소로1-177, 대로3-2, 중로2-10, 중로2-6, 중로2-11, 대로3-3, 소로1-183, 대로1-11, 완충녹지25, 완충녹지26, 지축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근린공원15, 근린공원16, 경관녹지47, 중로2-47, 중로2-19 및 용두동에서 동산동으로 편입된 하천1, 종교6, 전기공급1, 환경자원시설1, 근린공원2, 경관녹지44, 소로3-489, 소로2-534, 공원3 |
| | | 용두동 | 용두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641-25, 641-26, 641-30, 641-31, 641-32, 641-33, 641-49, 661-2, 661-5, 662-2, 662-3, 662-4, 662-5, 662-6, 662-7, 662-8, 662-9, 662-10, 662-11, 662-12, 664-2, 664-5, 664-6, 664-7, 664-8, 665, 665-1, 665-2, 665-3, 665-4, 666, 667, 668, 669-1, 669-3, 670-2, 672-2, 672-4를 제외한 전 지역 | | 용두동 | 용두동 중 도내동으로 편입된 641-25, 641-26, 641-30, 641-31, 641-32, 641-33, 641-49, 661-2, 661-5, 662-2, 662-3, 662-4, 662-5, 662-6, 662-7, 662-8, 662-9, 662-10, 662-11, 662-12, 664-2, 664-5, 664-6, 664-7, 664-8, 665, 665-1, 665-2, 665-3, 665-4, 666, 667, 668, 669-1, 669-3, 670-2, 672-2, 672-4를 제외한 전 지역 |
| | | 고양동 | 고양동 일원, 벽제동에서 고양동으로 편입된 778부터 1131까지 | | 고양동 | 고양동 일원, 벽제동에서 고양동으로 편입된 778부터 1131까지 |
| | <신 설> | 벽제동 | 벽제동 중 고양동으로 편입된 287-2, 288-1, 289-1, 297-34, | 덕양구 | 벽제동 | 벽제동 중 고양동으로 편입된 287-2, 288-1, 289-1, 297-34, 307-1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 307-1・3・4・5・6, 308-1~5, 310-2, 312-4, 317-1・8・10・11・12, 322-1・4・5・6, 323-1~5, 324, 324-1, 325-1~7, 326, 326-1, 327-1~10, 327-12~15, 337, 338, 338-1~6, 339, 339-3・4, 340-1~3, 340-5~10, 341-1・2, 341-5~12, 341-14, 341-17~21, 341-23~25, 341-28・32・33・35・37・43・45・47, 342-1, 342-3~14, 343, 343-5・11・12, 344, 344-1・4・8, 345, 345-1, 346-2・3, 346-5~17, 346-20, 346-23~27, 346-29・30, 346-32~35, 346-37・38, 346-41~44, 346-47・48, 346-50~56, 346-58~60, 346-62~66, 346-69・72, 346-74~81, 346-85~87, 347-1~4, 348-1~4, 349, 349-1・3・4, 350-2・4・5・6・7・10・11・12, 351-1~3, 351-8・9・27, 352-1・10, 353-2・4・5・7, 354, 354-3, 355-5・7, 356-5・21, 358-3・4・7・16, 360-1~5, 360-10・12・14・15・17・24・26, 424, 424-1~4, 424-7, 424-9~11, 425-1~5, 425-9~12, 425-16・17・18・21・23・25・26・29・36・37・42, 427, 427-3~23, 428-1・3・5・7・9, 428-13~24, 429, 429-2~7, 429-9, 429-15~18, 431-2・3・6, 679-21・25・31・72, 688-1, 695, 695-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을 제외한 전지역 |
| | 덕양구 | 선유동 | 선유동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416-1~10, 417, 418, 419-1~6, 420-1~5, 421, 422-1~5, 423-1・2, 424, 425-1・2, 426, 427, 427-1, 430, 430-1, 431-1・4, 432-2, 433-1・2・3, 434-2・3, 436, 437-1・4・6, 438-1・4・5・6, 439-1・2, 440-1・2, 441, 442, 443-1~9, 444-1・2, 445-1~5, 446, 447-1~6, 448-1~17, 449, 449-1・2, 450-1・2, 451-1~4, 452-1・2, 453, 454, 454-1, 455, 456, 456-1, 520-1・2・6, 534를 제외한 전지역 |
| | | 대자동 | 대자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225-8, 1187-11~12를 제외한 전지역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3・4・5・6, 308-1~5, 310-2, 312-4, 317-1・8・10・11・12, 322-1・4・5・6, 323-1~5, 324, 324-1, 325-1~7, 326, 326-1, 327-1~10, 327-12~15, 337, 338, 338-1~6, 339, 339-3・4, 340-1~3, 340-5~10, 341-1・2, 341-5~12, 341-14, 341-17~21, 341-23~25, 341-28・32・33・35・37・43・45・47, 342-1, 342-3~14, 343, 343-5・11・12, 344, 344-1・4・8, 345, 345-1, 346-2・3, 346-5~17, 346-20, 346-23~27, 346-29・30, 346-32~35, 346-37・38, 346-41~44, 346-47・48, 346-50~56, 346-58~60, 346-62~66, 346-69・72, 346-74~81, 346-85~87, 347-1~4, 348-1~4, 349, 349-1・3・4, 350-2・4・5・6・7・10・11・12, 351-1~3, 351-8・9・27, 352-1・10, 353-2・4・5・7, 354, 354-3, 355-5・7, 356-5・21, 358-3・4・7・16, 360-1~5, 360-10・12・14・15・17・24・26, 424, 424-1~4, 424-7, 424-9~11, 425-1~5, 425-9~12, 425-16・17・18・21・23・25・26・29・36・37・42, 427, 427-3~23, 428-1・3・5・7・9, 428-13~24, 429, 429-2~7, 429-9, 429-15~18, 431-2・3・6, 679-21・25・31・72, 688-1, 695, 695-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을 제외한 전 지역 |
| **<삭 제>** | 선유동 | 선유동 중 오금동으로 편입된 416-1~10, 417, 418, 419-1~6, 420-1~5, 421, 422-1~5, 423-1・2, 424, 425-1・2, 426, 427, 427-1, 430, 430-1, 431-1・4, 432-2, 433-1・2・3, 434-2・3, 436, 437-1・4・6, 438-1・4・5・6, 439-1・2, 440-1・2, 441, 442, 443-1~9, 444-1・2, 445-1~5, 446, 447-1~6, 448-1~17, 449, 449-1・2, 450-1・2, 451-1~4, 452-1・2, 453, 454, 454-1, 455, 456, 456-1, 520-1・2・6, 534를 제외한 전 지역 |
| | 대자동 | 대자동 중 신원동으로 편입된 225-8, 1187-11~12를 제외한 전 지역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관산동 | 관산동 일원과 사리현동에서 관산동으로 편입된 1013 |
| | <신 설> | 내유동 | 내유동중 지영동으로 편입된 841-1, 842, 843, 844, 845, 946, 047-1・2, 848-1・2, 849, 850-1・2, 851-1~3, 852-1・2, 853-1~3, 854-1~4, 855-1, 856-1・2, 857-1~5, 858-1~4, 859-1・2, 860-1~25, 861, 862, 862-1, 863-1~21, 863-23~40, 864, 865-1・2, 866-2・3, 867-2~6, 868-1~10, 868-12~16, 869-3・4, 870-2・3, 871-1, 872-1, 873-1~19, 874-1, 875-1,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1・2, 886-1, 887-1~5, 887-8・9, 888-1・3, 889-1~5, 889-7・9・11・13, 889-15~20, 890-1・2, 981-1・2・4・5, 892-1~4, 892-6, 893-1~8, 893-10, 893-12~14, 894-1~4, 895, 896-1・3・4, 897-1・2, 898-1・2, 931-2, 933-2, 934-2, 935, 936-1・2, 937-1~3, 938-1~4, 939-1・2, 940-1, 941-1~3, 941-8, 942, 943, 944, 945-1・2, 946-1・2, 947-1・2, 948-1~4, 949, 949-1・4・6・7, 950-1・2, 951-1~3, 952, 952-1~3, 954, 955, 956-2, 957-2, 962-2, 963-2・3・5, 964, 966-5・6, 966-2-~24, 1012, 1013, 1014, 1017, 1017-1~53, 1021, 1021-1011, 1023을 제외한 전지역 |
| | 덕양구 | 내곡동 | 내곡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3-7, 504-8을 제외한 전지역 |
| | | 대장동 | 대장동중 화정동으로 편입된 1-1・3・4, 2-2・7・12, 3-2, 3-12~14, 3-19・20, 4-2・6, 5-1・2, 6-7~9, 539-9, 542-3을 제외한 전지역 |
| | | 신평동 | 신평동 일원 |
| | | 토당동 | 토당동 일원,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913 |
| | | 화정동 | 토당동에서 편입된 화정동 25, 25-1, 26, 26-1~8, 27-1・2, 28, 29-1・5, 33-3, 33-6・7, 474, 503-1, 503-3~20, 503-22, 504-3, 510-1, 510-5, 514-4~8, 514-13~24, 514-25~51,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관산동 | 관산동 일원과 사리현동에서 관산동으로 편입된 1013 |
| 덕양구 | 내유동 | 내유동 중 지영동으로 편입된 841-1, 842, 843, 844, 845, 846, 847-1・2, 848-1・2, 849, 850-1・2, 851-1~3, 852-1・2, 853-1~3, 854-1~4, 855-1, 856-1・2, 857-1~5, 858-1~4, 859-1・2, 860-1~25, 861, 862, 862-1, 863-1~21, 863-23~40, 864, 865-1・2, 866-2・3, 867-2~6, 868-1~10, 868-12~16, 869-3・4, 870-2・3, 871-1, 872-1, 873-1~19, 874-1, 875-1,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1・2, 886-1, 887-1~5, 887-8・9, 888-1・3, 889-1~5, 889-7・9・11・13, 889-15~20, 890-1・2, 981-1・2・4・5, 892-1~4, 892-6, 893-1~8, 893-10, 893-12~14, 894-1~4, 895, 896-1・3・4, 897-1・2, 898-1・2, 931-2, 933-2, 934-2, 935, 936-1・2, 937-1~3, 938-1~4, 939-1・2, 940-1, 941-1~3, 941-8, 942, 943, 944, 945-1・2, 946-1・2, 947-1・2, 948-1~4, 949, 949-1・4・6・7, 950-1・2, 951-1~3, 952, 952-1~3, 954, 955, 956-2, 957-2, 962-2, 963-2・3・5, 964, 966-5・6, 966-2~24, 1012, 1013, 1014, 1017, 1017-1~53, 1021, 1021-1011, 1023을 제외한 전 지역 |
| <삭 제> | 내곡동 | 내곡동 중 산황동으로 편입된 3-7, 504-8을 제외한 전 지역 |
| | 대장동 | 대장동 중 화정동으로 편입된 1-1・3・4, 2-2・7・12, 3-2, 3-12~14, 3-19・20, 4-2・6, 5-1・2, 6-7~9, 539-9, 542-3을 제외한 전 지역 |
| | 신평동 | 신평동 일원 |
| | 토당동 | 토당동 일원,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913 |
| | 화정동 | 토당동에서 편입된 화정동 25, 25-1, 26, 26-1~8, 27-1・2, 28, 29-1・5, 33-3, 33-6・7, 474, 503-1, 503-3~20, 503-22, 504-3, 510-1, 510-5, 514-4~8, 514-13~24, 514-25~51,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514-53, 514-55·56, 514-58, 514-60~69, 514-71, 514-74~79, 514-81, 514-92, 514-97, 514-100·101, 514-103, 514-105~108, 514-111~117, 산80-3, 산81-1, 산82, 산83-4~10, 산86, 산87-5, 산176, 산176-1·2, 산178, 산179, 산179-1~5, 산180, 산180-3~8, 산190-6·7, 산193-1, 산193-3·4, 산193-9, 산194-12, 산194-14~16을 제외한 전지역 | | | 514-53, 514-55·56, 514-58, 514-60~69, 514-71, 514-74~79, 514-81, 514-92, 514-97, 514-100·101, 514-103, 514-105~108, 514-111~117, 산80-3, 산81-1, 산82, 산83-4~10, 산86, 산87-5, 산176, 산176-1·2, 산178, 산179, 산179-1~5, 산180, 산180-3~8, 산190-6·7, 산193-1, 산193-3·4, 산193-9, 산194-12, 산194-14~16을 제외한 전 지역 |
| | | 행주내동 | 행주내동 일원과 행주외동에서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724, 724-1, 725, 725-1~3, 726, 726-1~2, 727, 727-1, 728, 729, 730, 730-1~5, 731, 731-1~5, 732, 732-1~11, 733, 733-1~5, 734-6~7, 735, 735-1~10, 736, 736-1~2, 737-3~8, 738, 739, 740, 740-1~8, 741, 741-1~8, 742, 742-1~5, 743, 743-1~13, 744, 744-1~7, 745, 745-1~7, 746, 746-1~4, 747, 747-1, 748, 748-1를 신설한다. | | 행주내동 | 행주내동 일원과 행주외동에서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724, 724-1, 725, 725-1~3, 726, 726-1~2, 727, 727-1, 728, 729, 730, 730-1~5, 731, 731-1~5, 732, 732-1~11, 733, 733-1~5, 734-6~7, 735, 735-1~10, 736, 736-1~2, 737-3~8, 738, 739, 740, 740-1~8, 741, 741-1~8, 742, 742-1~5, 743, 743-1~13, 744, 744-1~7, 745, 745-1~7, 746, 746-1~4, 747, 747-1, 748, 748-1 |
| | 덕양구 | 행주외동 | 행주외동 일원중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1-1~2, 2-1~4, 3-1~3, 4-1~2, 5, 6, 32-1~2, 32-4~6, 32-12, 33-5~7, 33-10~12, 34, 34-2~10, 32-12, 34-14, 35-1~6, 36-1~2, 37-1~5, 37-7, 37-10~14, 38, 38-1~2, 39-1~6, 40, 41, 42-1~9, 43-1~9, 44-1~6, 45-1~2, 45-4~15, 46-1~8, 47-1~8, 48-1~5, 49-1, 49-5, 282-1, 282-4를 삭제한다. | <삭 제> | 행주외동 | 행주외동 일원 중 행주내동으로 편입된 1-1~2, 2-1~4, 3-1~3, 4-1~2, 5, 6, 32-1~2, 32-4~6, 32-12, 33-5~7, 33-10~12, 34, 34-2~10, 32-12, 34-14, 35-1~6, 36-1~2, 37-1~5, 37-7, 37-10~14, 38, 38-1~2, 39-1~6, 40, 41, 42-1~9, 43-1~9, 44-1~6, 45-1~2, 45-4~15, 46-1~8, 47-1~8, 48-1~5, 49-1, 49-5, 282-1, 282-4를 제외한 전 지역 |
| | | 행신동 |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664-4를 제외한 전지역 | | 행신동 | 행신동에서 토당동으로 편입된 664-4를 제외한 전 지역 |
| | | 강매동 | 강매동 일원 | | 강매동 | 강매동 일원 |
| | | 향동동 | 향동동 일원 | | 향동동 | 향동동 일원 |
| | | 화전동 | 화전동 일원 | | 화전동 | 화전동 일원 |
| | <신 설> | 덕은동 | 덕은동 일원 | 덕양구 | 덕은동 | 덕은동 일원 |
| | | 현천동 | 현천동 일원 | | 현천동 | 현천동 일원 |
| | 일산동구 | 식사동 | 식사동 일원, 식사동중 풍동으로 편입된 878-2, 878-24를 제외한 전지역 | 일산동구 | 식사동 | 식사동 일원, 식사동 중 풍동으로 편입된 878-2, 878-24를 제외한 전 지역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일산동구 | 중산동 |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679, 1679-1, 1738, 1741, 1769, 1770을 제외한 전지역 |
| | | 정발산동 | 정발산동 일원, 장항동에서 정발산동으로 편입된 1603-1, 1603-2, 1603-3, 1603-4 |
| | | 풍동 | 풍동 일원, 식사동에서 풍동으로 편입된 195-35~36 |
| | | 산황동 | 산황동 일원과 주교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307-1·2·3·4·5·6 및 내곡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806-33·34 |
| | | 백석동 | 백석동중 내곡동으로 편입된 2-1~52, 22-1~15를 제외한 전지역과 내곡동에서 백석동으로 편입된 929-1~12, 929-14~26, 1128-9~10, 1132-1~9, 1132-13를 포함한다. |
| | | 마두동 | 마두동 일원 |
| | | 장항동 | 장항동 일원과, 대화동에서 편입된 장항동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중산동 |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679, 1679-1, 1738, 1741, 1769, 1770을 제외한 전 지역 |
| | 정발산동 | 정발산동 일원, 장항동에서 정발산동으로 편입된 1603-1, 1603-2, 1603-3, 1603-4 |
| <삭 제> | 풍동 | 풍동 일원, 식사동에서 풍동으로 편입된 195-35~36 |
| | 산황동 | 산황동 일원과 주교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307-1·2·3·4·5·6 및 내곡동에서 산황동으로 편입된 806-33·34 |
| | 백석동 | 백석동 중 내곡동으로 편입된 2-1~52, 22-1~15를 제외한 전 지역과 내곡동에서 백석동으로 편입된 929-1~12, 929-14~26, 1128-9~10, 1132-1~9, 1132-13 |
| | 마두동 | 마두동 일원 |
| | 장항동 | 장항동 일원과 대화동에서 편입된 장항동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
| | **<신 설>** | 사리현동 | 사리현동 중 관산동으로 편입된 34-3을 제외한 전지역 |
| | | 지영동 | 지영동 일원과 내유동에서 지영동으로 편입된 779, 780, 780-1, 781, 781-1, 782~833, 833-1, 834~864, 864-1, 865~920, 920-1·2, 921~1002, 1002-1, 1003~1020, 1020-1~17, 1021~1035, 1035-1, 1036, 1037, 1037-1, 1038~1069, 1069-1, 1070~1087, 1087-1, 1088~1103를 포함한다. |
| | | 문봉동 | 문봉동 일원 |
| | | 설문동 | 설문동 일원 |
| | | 성석동 | 성석동 일원 |
| | 일산서구 | 일산동 | 일산동 일원,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 | | 탄현동 | 탄현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7-30·40·43·45·47·49·52·53·54·56·57·58·59·62·63·64·65·66·69·71·72·73·75·76·79·83·84·85·87·89·90, 17-94~98, 18-3·4·7·13·14·16·27, 19-3·4·5·7·8, 19-11~21, 19-27~34, 19-36~40, 19-42·45·46·47, 19-51~65, 20-1~9, 20-11·13·14·15·17·22, 21-1·2·5·6·7, 22, 22-2·5·6·7, 23-2·4·7·8·9·11·12·13·24·25·26·27·29, 23-31~37, 23-39·41·42·43·45·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
| 일산동구 | 사리현동 | 사리현동 중 관산동으로 편입된 34-3을 제외한 전 지역 |
| | 지영동 | 지영동 일원과 내유동에서 지영동으로 편입된 779, 780, 780-1, 781, 781-1, 782~833, 833-1, 834~864, 864-1, 865~920, 920-1·2, 921~1002, 1002-1, 1003~1020, 1020-1~17, 1021~1035, 1035-1, 1036, 1037, 1037-1, 1038~1069, 1069-1, 1070~1087, 1087-1, 1088~1103 |
| | 문봉동 | 문봉동 일원 |
| | 설문동 | 설문동 일원 |
| | 성석동 | 성석동 일원 |
| 일산서구 | 일산동 | 일산동 일원, 중산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 | 탄현동 | 탄현동에서 일산동으로 편입된 17-30·40·43·45·47·49·52·53·54·56·57·58·59·62·63·64·65·66·69·71·72·73·75·76·79·83·84·85·87·89·90, 17-94~98, 18-3·4·7·13·14·16·27, 19-3·4·5·7·8, 19-11~21, 19-27~34, 19-36~40, 19-42·45·46·47, 19-51~65, 20-1~9, 20-11·13·14·15·17·22, 21-1·2·5·6·7, 22, 22-2·5·6·7, 23-2·4·7·8·9·11·12·13·24·25·26·27·29, 23-31~37, 23-39·41·42·43·45·47·48·49·53·55·56·58, 23-62~70, 23-73·75·77·78·80·81·82·83, 23-86~94, 23-96~100, 23-102·103, 23-10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 47・48・49・53・55・56・58, 23-62~70, 23-73・75・77・78・80・81・82・83, 23-86~94, 23-96~100, 23-102・103, 23-105~108, 23-119・123・124・125・126・136・137・139・140・142・145・147・148・150・154・157・158, 23-165~180, 23-183~191, 25-1, 26-1・2・5・6・7・10・11・12・13・15・17・18, 27-16・17・18・23, 28, 28-1・2・3・5・6・7・8・9・11・14・15・16・17, 29-1・2・4・6・7・8・9, 29-11~26, 30-7・15・16・18・20・21・22, 30-23, 30-25~33, 30-36・37・38・40・41・42・46・47・55, 31-17, 32-1, 33-1・2・5・8・11・12・14・15・17・18・20・21・22・26・29・32・36・38・39・40・41・43・44・46・47・48・58・63・65・66・67・68・69・72・73, 34, 34-4・6・11・17・19・20・21・22・26, 36-1~7, 36-9~36, 36-41・42・46・48・54・56・70, 37-2・3・8・22・23・25・26, 37-31~35, 39-2・3, 176-4, 182-3, 184-12, 185-5, 196-1, 197, 197-2, 198, 198-3・6・9・10・14・17, 198-21~28, 198-30, 199-37・53・55・57・59・79・80・92・93・97・98, 1416, 1441-13・14, 1445, 1445-2, 1446, 1469, 1633, 산32-3를 제외한 전지역 |
| | 일산서구<br>**<신 설>** | 주엽동<br>대화동 | 주엽동 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39, 140, 181-3을 제외한 전지역<br>대화동에서 장항동으로 편입된 1063, 1064, 1065-1・2・3・4, 1066-1・3・4・5, 1066-6・7・8・9・10・11・12・13・14・15, 1067, 1067-1・3・4・5・6・7, 1068, 1068-1・2, 1069, 1069-1・2, 1070-1・2, 1071, 1073, 1073-1・2, 1075, 1100-1・2, 1101-1・2・3, 1105-3, 1107-1・2, 1112, 1112-2・3・4, 1116, 1116-1, 1120, 1121-1・2・3, 1122-1, 1123, 1129-1・2・7・8・9, 1143-1・3・4, 1145, 1145-1・2・3・4・5・6・7・8・9・10, 1151-1・3・4・5・6・7・8, 1152-1・2・4・5・6・7, 1154-1, 1155-1・2・3・5・6・7・8・9, 1160-1・2・3・4・5・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5~108, 23-119・123・124・125・126・136・137・139・140・142・145・147・148・150・154・157・158, 23-165~180, 23-183~191, 25-1, 26-1・2・5・6・7・10・11・12・13・15・17・18, 27-16・17・18・23, 28, 28-1・2・3・5・6・7・8・9・11・14・15・16・17, 29-1・2・4・6・7・8・9, 29-11~26, 30-7・15・16・18・20・21・22, 30-23, 30-25~33, 30-36・37・38・40・41・42・46・47・55, 31-17, 32-1, 33-1・2・5・8・11・12・14・15・17・18・20・21・22・26・29・32・36・38・39・40・41・43・44・46・47・48・58・63・65・66・67・68・69・72・73, 34, 34-4・6・11・17・19・20・21・22・26, 36-1~7, 36-9~36, 36-41・42・46・48・54・56・70, 37-2・3・8・22・23・25・26, 37-31~35, 39-2・3, 176-4, 182-3, 184-12, 185-5, 196-1, 197, 197-2, 198, 198-3・6・9・10・14・17, 198-21~28, 198-30, 199-37・53・55・57・59・79・80・92・93・97・98, 1416, 1441-13・14, 1445, 1445-2, 1446, 1469, 1633, 산32-3를 제외한 전 지역 |
| **<삭 제>**<br>일산서구 | 주엽동<br>대화동 | 주엽동 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39, 140, 181-3을 제외한 전 지역<br>대화동에서 장항동으로 편입된 1063, 1064, 1065-1・2・3・4, 1066-1・3・4・5, 1066-6・7・8・9・10・11・12・13・14・15, 1067, 1067-1・3・4・5・6・7, 1068, 1068-1・2, 1069, 1069-1・2, 1070-1・2, 1071, 1073, 1073-1・2, 1075, 1100-1・2, 1101-1・2・3, 1105-3, 1107-1・2, 1112, 1112-2・3・4, 1116, 1116-1, 1120, 1121-1・2・3, 1122-1, 1123, 1129-1・2・7・8・9, 1143-1・3・4, 1145, 1145-1・2・3・4・5・6・7・8・9・10, 1151-1・3・4・5・6・7・8, 1152-1・2・4・5・6・7, 1154-1, 1155-1・2・3・5・6・7・8・9, 1160-1・2・3・4・5・6・7, 1161, 1161-1, 1164, 1165, 1165-2, 1165-3, 1165-4・5・6, 1166, 1166-1・2, 1167- |

## 현 행

| 시 명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 6·7, 1161, 1161-1, 1164, 1165, 1165-2, 1165-3, 1165-4·5·6, 1166, 1166-1·2, 1167-1·3·4·5·7·8, 1168-1·2·3·4·5, 1169, 1169-1·2·3, 1181-1·2·3·4·6, 1182, 1182-1·2·3·4, 1183-1·2·3·4, 1189-1·2·3, 1190-2, 1206-4, 1208, 1208-4, 1309-66·68·105·118·119·120·121, 1310-5·6, 1319-1·2·3, 1321-10·12, 1322-2, 1323-4, 1362-2, 1363-2·4·6, 1396-230·231·232·234·235·241·242·243·244·245·262·291·296·377·378·380, 1943-29, 1949-6·7·17·18·20·36, 1951, 1951-1·2·3·4·5·6·7·8·10·11·12·13·14·15·16·17·18·27, 1953, 1953-1·2·3·4·7·10·11·12·13을 제외한 전지역 |
| | 일산서구 | 법곶동 | 법곶동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67-2, 168-1, 169-2~3, 171-1, 283-1, 284-1, 287-1, 288-1, 289-1, 290-1~8, 291-1~6, 292-1~5, 293-1, 294-1, 294-3~7, 295, 296-1, 727, 727-1, 727-2를 제외한 전지역 |
| | | 구산동 | 구산동 일원 |
| | | 가좌동 | 가좌동 일원 |
| | | 덕이동 | 덕이동 일원 |

## 개 정 안

| 구 명 | 동 명 | 관 할 구 역 |
|---|---|---|
| | | 1·3·4·5·7·8, 1168-1·2·3·4·5, 1169, 1169-1·2·3, 1181-1·2·3·4·6, 1182, 1182-1·2·3·4, 1183-1·2·3·4, 1189-1·2·3, 1190-2, 1206-4, 1208, 1208-4, 1309-66·68·105·118·119·120·121, 1310-5·6, 1319-1·2·3, 1321-10·12, 1322-2, 1323-4, 1362-2, 1363-2·4·6, 1396-230·231·232·234·235·241·242·243·244·245·262·291·296·377·378·380, 1943-29, 1949-6·7·17·18·20·36, 1951, 1951-1·2·3·4·5·6·7·8·10·11·12·13·14·15·16·17·18·27, 1953, 1953-1·2·3·4·7·10·11·12·13을 제외한 전지역 |
| <삭 제> | 법곶동 | 법곶동 중 대화동으로 편입된 167-2, 168-1, 169-2~3, 171-1, 283-1, 284-1, 287-1, 288-1, 289-1, 290-1~8, 291-1~6, 292-1~5, 293-1, 294-1, 294-3~7, 295, 296-1, 727, 727-1, 727-2를 제외한 전지역 |
| | 구산동 | 구산동 일원 |
| | 가좌동 | 가좌동 일원 |
| | 덕이동 | 덕이동 일원 |

고양시 공고 제2026-2308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 가와지쌀·일산열무 등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K-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연구개발과
- 전 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031-8075-4306
- 팩 스: 031-8075-489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각각 “이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연구개발과 |
|---|---|---|
| 입<br>안<br>자 | 부 서 장<br>성 명 | 연구개발과장<br>양 희 경 |
| | 팀 장<br>성 명 | 가공기술팀장<br>송가영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이현정<br>(031-8075-4306)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 사용하려는 ---------- ----------. |
| 1.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1. ---------- 이용하려는 ---------- ----------. |
|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 이용하려는 ------ |
| <신 설> | 3.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
| <신 설> |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9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급·2급·3급 관사의 구분을 일원화함(안 제47조).

나.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관사”를 ““관사””로,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을 “시 소속 직원의 사용을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 관리”를 “시장은 관사 관리”로,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및 2

급 관사에만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재산관리과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재산관리과장<br>양 상 윤 |
| | 팀 장<br>성 명 | 청사관리팀장<br>김 용 우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최 유 정<br>(031-8075-2534)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6조(정의) -------- “관사”---- 시 소속 직원의 사용을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 |
|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br>1. 1급 관사: 시장 관사<br>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br>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과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제48조(사용허가) ---------- ---------- 따라 ----------. <단서 삭제> |
|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br>1. ~ 4. (생 략) | 제49조(사용책임) ---------소속 직원---------- ---------- ---------- ---------- --------.<br>1. ~ 4. (현행과 같음) |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관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 | 시장은 관사 관리----------<br>----------<br>--사용자----------<br>----------<br>----------<br>-------. |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br>----------<br>----------<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2. ----------<br>---------- 관리비 |
|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 4.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4. ----------<br>----------<br>------ 경비 |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 <삭 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만 한정한다) | |
|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만 한정한다) | <삭 제> |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br>----------<br>----------<br>----.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자가 ----------<br>----------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생 략) |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 | ② ----------<br>----------<br>----------<br>----------<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 |

고양시 공고 제2026 - 2310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의 사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공무원”에서 “사용자”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을 “사용자가 아니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정규직공무원”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재산관리과 |
|---|---|---|
| 입안자 | 부 서 장<br>성 명 | 재산관리과장<br>양 상 윤 |
| | 팀 장<br>성 명 | 청사관리팀장<br>김 용 우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최 유 정<br>(031-8075-2534)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4조(관사관리) ① ---- 사용자가 아니면 ----------<br>----------<br>-. ---, 사용자가 ----------<br>----------<br>---------- 직원 ----<br>----------<br>-----. |
|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br>사용하려는 ----------<br>----------<br>----------<br>----------<br>----------<br>----------<br>----------<br>----------. |

고양시 공고 제2026-2312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선임 보건소 과장을 소속 기관 및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일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 기준을 일원화함(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보건행정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8075-4002
- 팩 스: 031-8075-4883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을 “각 구 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의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한차례만”을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에도 적용한다.

| 소 관 부 서 | | 덕양구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입<br>안<br>자 | 부 서 장<br>성 명 | 보건행정과장<br>이 순 화 |
| | 팀 장<br>성 명 | 보건행정팀장<br>정 영 선 |
| | 담 당 자<br>성명·연락처 | 정 진 아<br>(031-8075-4004)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 ----------이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③ ---------- 각 구 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의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 하며, 한 차례만 ----------.**<단서 삭제>** |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 노력해야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삭 제>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6-20호

# 지적기준점표지 신규 설치 및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지적기준점 총36점
   (지적도근점 신설 21점, 지적도근점 폐기 15점)(붙임 참조)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3. 좌표 및 소재지, 기준점 설치일 : 붙임 참조

4. 표지의 재질 : 표철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6. 연락처: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6172)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현황

| 순번 | 지적기준점 | | 원점명 | 세계좌표(GRS80) | | | 지적위성좌표 | | 설치일 (고시일) | 소재지 | 표지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비고 |
|---|---|---|---|---|---|---|---|---|---|---|---|---|---|
| | 명칭 | 번호 | | X(m) | Y(m) | 표고 | 위도 | 경도 | | | | | |
| 1 | 지적도근점 | 8900 | 중부원점 | 563024.44 | 182627.60 | 10.208 | 37° 40' 00.1289" N | 126° 48' 11.1518"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06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2 | 지적도근점 | 8901 | 중부원점 | 563011.04 | 182588.88 | 11.457 | 37° 39' 59.6916" N | 126° 48' 09.5730"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08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3 | 지적도근점 | 8902 | 중부원점 | 563000.08 | 182538.42 | 11.141 | 37° 39' 59.3327" N | 126° 48' 07.5151"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10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4 | 지적도근점 | 8903 | 중부원점 | 562921.66 | 182487.94 | 10.835 | 37° 39' 56.7857" N | 126° 48' 05.4621"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15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5 | 지적도근점 | 8904 | 중부원점 | 562899.66 | 182522.48 | 10.483 | 37° 39' 56.0745" N | 126° 48' 06.8733"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15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6 | 지적도근점 | 8905 | 중부원점 | 562893.70 | 182552.99 | 10.026 | 37° 39' 55.8832" N | 126° 48' 08.1187"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180-6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7 | 지적도근점 | 8906 | 중부원점 | 562838.63 | 182514.60 | 9.932 | 37° 39' 54.0944" N | 126° 48' 06.5571"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17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8 | 지적도근점 | 8907 | 중부원점 | 562866.53 | 182455.04 | 11.336 | 37° 39' 54.9953" N | 126° 48' 04.1245"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17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9 | 지적도근점 | 8908 | 중부원점 | 562867.86 | 182392.16 | 11.273 | 37° 39' 55.0341" N | 126° 48' 01.5587"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1334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0 | 지적도근점 | 8909 | 중부원점 | 562794.69 | 182375.96 | 11.266 | 37° 39' 52.6597" N | 126° 48' 00.9041"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349-8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1 | 지적도근점 | 8910 | 중부원점 | 562667.88 | 182343.11 | 9.732 | 37° 39' 48.5443" N | 126° 47' 59.5748"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349-31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2 | 지적도근점 | 8911 | 중부원점 | 562641.03 | 182396.38 | 9.292 | 37° 39' 47.6771" N | 126° 48' 01.7506"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349-31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3 | 지적도근점 | 8912 | 중부원점 | 562566.73 | 182389.22 | 9.416 | 37° 39' 45.2667" N | 126° 48' 01.4649"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60-1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4 | 지적도근점 | 8913 | 중부원점 | 562520.99 | 182468.27 | 7.782 | 37° 39' 43.7885" N | 126° 48' 04.6942"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60-2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5 | 지적도근점 | 8914 | 중부원점 | 562571.14 | 182502.23 | 8.998 | 37° 39' 45.4175" N | 126° 48' 06.0754"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75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6 | 지적도근점 | 8915 | 중부원점 | 562649.52 | 182577.07 | 9.590 | 37° 39' 47.9649" N | 126° 48' 09.1222"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402-13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7 | 지적도근점 | 8916 | 중부원점 | 562700.34 | 182599.26 | 9.516 | 37° 39' 49.6148" N | 126° 48' 10.0232"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60-8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8 | 지적도근점 | 8917 | 중부원점 | 562791.99 | 182619.84 | 10.667 | 37° 39' 52.5888" N | 126° 48' 10.8551"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62-2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19 | 지적도근점 | 8918 | 중부원점 | 562839.40 | 182685.93 | 11.429 | 37° 39' 54.1311" N | 126° 48' 13.5476"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174-17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20 | 지적도근점 | 8919 | 중부원점 | 562961.58 | 182749.06 | 10.143 | 37° 39' 58.0983" N | 126° 48' 16.1130"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850-1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21 | 지적도근점 | 8920 | 중부원점 | 563049.70 | 182775.23 | 11.568 | 37° 40' 00.9582" N | 126° 48' 17.1734" E | 2026-10-23 | 일산동구 풍동 942-14 | 철재 |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서고 | 설치 |

# 지적기준점표지 망실[폐지] 현황

| 순번 | 기준점 명칭 | 번호 | 세계좌표(GRS80) | | 고시일 | 소재지 | 표지 재질 | 비고 |
|---|---|---|---|---|---|---|---|---|
| | | | X(m) | Y(m) | | | | |
| 1 | 지적도근점 | 2179 | 563,033.88 | 182,659.12 | 2026-10-23 | 풍동 180-4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2 | 지적도근점 | 2180 | 562,855.30 | 182,552.29 | 2026-10-23 | 풍동 180-6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3 | 지적도근점 | 2181 | 562,744.55 | 182,485.54 | 2026-10-23 | 풍동 180-6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4 | 지적도근점 | 2182 | 562,619.92 | 182,410.55 | 2026-10-23 | 풍동 180-5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5 | 지적도근점 | 2265 | 562,993.12 | 182,504.61 | 2026-10-23 | 풍동 1333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6 | 지적도근점 | 2270 | 562,875.49 | 182,405.47 | 2026-10-23 | 풍동 1375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7 | 지적도근점 | 3487 | 562,951.90 | 182,755.59 | 2026-10-23 | 풍동 856-2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8 | 지적도근점 | 3488 | 562847.45 | 182678.00 | 2026-10-23 | 풍동 174-10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9 | 지적도근점 | 3489 | 562806.22 | 182634.24 | 2026-10-23 | 풍동 861-1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0 | 지적도근점 | 3490 | 562684.14 | 182591.77 | 2026-10-23 | 풍동 860-8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1 | 지적도근점 | 3491 | 562605.79 | 182539.74 | 2026-10-23 | 풍동 860-8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2 | 지적도근점 | 3492 | 562552.94 | 182490.81 | 2026-10-23 | 풍동 860-8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3 | 지적도근점 | 3494 | 562572.95 | 182382.45 | 2026-10-23 | 풍동 180-5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4 | 지적도근점 | 1824 | 565008 | 184176.32 | 2026-10-23 | 식사동 949-29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 15 | 지적도근점 | 4079 | 561886.43 | 178212.51 | 2026-10-23 | 장항동 1821-1 | 철재 | 지적도근점 망실 |

고양시 고시 제2026 - 276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92번길 48 등 3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일 |
|---|---|---|---|
| 별 지 참 조 | | | |

| 종전주소 | 변경전 도로명주소 | 변경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변경일 | 변경사유 |
|---|---|---|---|---|
| 별 지 참 조 | | | | |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
| 별 지 참 조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 연번 | 종 전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부 여 사 유 | 비 고 |
|---|---|---|---|---|---|---|
| 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04-7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92번길 48 | 2026-10-23 | 2010-01-26 | 덕이로 시점에서 2920m에 위치한 도로 | |
| 2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209-19 외 2필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3 | 2026-10-23 | 2009-09-11 |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 |

##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폐지일 | 폐지 사유 | 법정동 | 비 고 |
|---|---|---|---|---|---|
| 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92번길 48 | 2026-10-23 |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 | 덕이동 | |

고양시 공고 제2026-2282호

#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사업)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양시장**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사용형태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주요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당초 | 대로 | 3 | 30 | 25.6~80 | 일반도로 | 주간선도로 | 4,025 | 대로2-6 화정동 428-41 | 광로창3-2 용두동 761-23 | - | 건설교통부 고시 제570호 ('71.09.27) | - |
| 변경 | 대로 | 3 | 30 | 25.6~97 | 일반도로 | 주간선도로 | 4,025 | 대로2-6 화정동 428-41 | 광로창3-2 용두동 761-23 | - | | |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대로3-30 | 대로3-30 | • 폭원 변경<br>B= 25.6~80m→25.6~97m<br>증)17m | • 고양창릉지구 및 원흥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폭원 증가 |

## □ 기타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6.(금) (14일간)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흥도동·화정1동·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3.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